

第227回國會
(臨時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2年2月8日(金)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업무보고

- 가. 노동부
- 나. 중앙노동위원회
- 다. 근로복지공단
- 라. 한국산업인력공단
- 마. 한국산업안전공단
- 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사. 한국노동교육원
- 아. 노사정위원회

審査된案件

1. 업무보고

가. 노동부	1
나. 중앙노동위원회	1
다. 근로복지공단	1
라. 한국산업인력공단	1
마. 한국산업안전공단	1
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
사. 한국노동교육원	1
아. 노사정위원회	1

(10시16분 개의)

○**委員長 李允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의사일정 제1항 노동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업무를 일괄해서 보고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동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동부장관께서 처음 임명이 되셔서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方鏞錫** 존경하는 李允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 업무보고

- 가. 노동부
- 나. 중앙노동위원회
- 다. 근로복지공단
- 라. 한국산업인력공단
- 마. 한국산업안전공단
- 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사. 한국노동교육원
- 아. 노사정위원회

오늘 제227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1월29일 노동부장관으로 부임하여 노동행정의 중책을 맡게 된 것에 대해 사명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수년간의 노동운동 경험과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그리고 짧지만 최근 경영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중책을 수행하기에는 식견과 경륜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질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경제는 4%대의 경제성장 등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지식정보화의 진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실업률이 연평균 3.5%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청소년실업, 장기실업 문제와 중소 제조업체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 등은 계속 주요과제로 남아 있을 전망입니다.

노사관계에서는 노사협력 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구조조정 및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이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이며 월드컵 개최, 양대 선거 등이 노사관계 안정에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 부는 올해 업무의 역점을 고용안정과 신노사문화 확산에 두고 이를 위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노동행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물량위주의 실업대책에서 탈피하여 고용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현장중심의 취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력의 합리적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식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인력수요가 많은 직종 중심으로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한편 산업현장에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월드컵, 아시안게임, 양대 선거 등 대내외적으로 국운을 좌우하는 큰 행사가 열리게 되어 노사관계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노사관계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 도움도 부탁드립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합리적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근로자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취약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차별개선과 모성보호제도의 정착에 더욱 노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우리의 노동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적극적인 노사 외교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개선 등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시각을 항상 견지하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려 깊은 지도와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금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열린 국회이면서 또한 최근 우리 부의 주요간부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松子 차관입니다.

金元培 기획관리실장입니다.

金容達 고용정책실장입니다.

安鍾根 노정국장입니다.

金聖中 근로기준국장입니다.

宋智泰 산업안전국장입니다.

申 洺 근로여성정책국장입니다.

金東男 공보관입니다.

趙柱炫 감사관입니다.

宋永重 노사협력관입니다.

孔德壽 국제협력관입니다.

鄭鍾秀 고용총괄심의관입니다.

朴鎔雄 능력개발심의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金元培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우리 부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允洙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보고는 주요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勞働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작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 금년도 노동행정 여건 전망,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주요 현안사업장 동향, 2002년도 정부입법 추진계획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 고용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3조 866억 원의 재원으로 범정부적 실업대책을……

○委員長 李允洙 실장, 2001년도 보고하고 노동행정 여건 전망 이것은 빼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부터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勞働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동행정의 기본목표를 고용안정과 신노사문화 확산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 중심의 노동행정을 통해서 구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정책 과제로서는 고용정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등 8개의 정책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정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고용안정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고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실업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총 2조 6971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227만 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량위주의 실업대책 사업을 줄여나가고 실업대책의 실효성 제고와 내실화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취업지원정책 추진을 위해서 주요 공단지역 일제 구인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고 구인등록 안내문을 8~9월에 발송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인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으며 동행면접을

활성화하며 취업담임제를 통하여 실업인정과 취업상담, 취업알선의 연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경력형성과 취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직장체험과 이를 통한 능력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직세일즈 공공근로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취업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실업자 조기 취업 지원을 위해서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자영업 창업 지원금액을 인상하겠으며 지원대상 요건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고용유지 지원금과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도 1월부터 조기에 착수하고 1/4분기에 재원을 집중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방안입니다.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을 확충하고 인력수급 전망을 통한 통계 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력을 합리적·체계적으로 활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연수생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금년 상반기 중 노동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외국인력 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내실화 방안입니다.

고용보험 수혜범위를 확대해서 농업·임업·수렵업의 4인 이하 사업체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전산망 개선추진 등 고용보험관리의 내실화를 추진해 나가고 자활사업의 조기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취업 취약계층 고용촉진 강화방안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2004년까지 국가·지자체의 장애인고용의무 비율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고 표준사업장을 개설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장 적응력을 제고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자 고용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고령자 취업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해 취업알선 기관별로 역할을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기준고용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고령자 적합직종 77개 직종도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시대에 부응한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훈련비 지원수준과 지원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강장려금을 통하여 자율적인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전문대학 이상에 재학하는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질 위주의 훈련으로 실업자훈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특히 IT분야의 경우 핵심 전문과정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향적 직업훈련 평가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실업자직업훈련, 재직자훈련 등 모든 훈련과정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훈련과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경제를 뒷받침하는 훈련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기능대와 공단의 훈련직종을 지식기반산업 직종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현장의 수요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기준을 대폭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의 변화에 부응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편을 위해서 자격종목을 현재 590개에서 400여 개로 대폭 정비를 하고 자격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설검정장 2개소를 추가 신설해서 국가기술자격 검정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입니다.

먼저 대화와 참여를 통한 노사 간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신노사문화 확산을 위해서 투명경영 실천을 통한 노사신뢰 형성을 유도해 나가고 노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작업장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대회를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의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해서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노사평화를 위한 국민마라톤대회를 4월7일에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공동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생산적 임금교섭을 지원하고 전국적인 노동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원만한 임금·단체교섭 분위기를 2월 하순부터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를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현장의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서 불법행위 재발방지와 합법적 노동운동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노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는 관행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분규 사전 예방기능과 분규발생 시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사정 간의 다양한 대화채널을 구축하겠으며 공무원·교수 노조허용 문제 등 노사관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합리적 보호를 위해서 노사정 위 논의를 통해서 근로조건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개선을 추진하겠으며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강화를 위해서 근로자 복지정책의 기본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으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재산형성과 중산층화를 촉진토록 하기 위해서 성과배분형 신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업복지의 내실화 추진을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기금 운용범위 확대 허용 등을 통해서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복지혜택을 선별하여 받을 수 있는 선택적 기업복지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한국노총의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콘도 100구좌를 추가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5개소를 추가 건립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산재보험제도의 선진화 방안입니다.

재정안정화와 요율·보상체계 정비 등 산재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의 징수와 보상체계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취업과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애 예방·치료를 위한 멘탈헬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중증고령의 산재장해인을 위해서 케어센터를 2003년에 개원할 수 있도록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진폐환자를 위해서 보호·요양시설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고용기반의 조기정착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상 기회균등과 차별개선을 위해서 고용평등취약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서 남녀고용평등실현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포상하고 수상기업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모성보호 및 직장가정의 양립 지원 방안이 되겠습니다.

모성보호 이행 확보를 위해서 산전후휴가제도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보육지원으로 근로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 중에 여대생의 기업현장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장 실업자에 대해서 창업지원과 취업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소자 근로조건 이행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소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이행실태를 7월에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방안이 되겠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CLEAN 3D 전담팀을 통해서 맞춤형 시설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다수발생·취약업체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특성에 적합한 기술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우미를 통한 작업 관련성 질환 고위험 사업장을 사전에 선정해서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화학공장 중대사고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조선업 산업재해 예방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재해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위해서 금

속제품 제조 등 5대 취약제조업종을 중점관리하고 건설현장 지도·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직업성 질환 조기발견을 위해 건강 감시네트워크를 운영하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확대 등 근로자 건강진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현장친화적 산재예방 사업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범국민적 안전의식 고취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적극적인 노동 외교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노동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 제고를 위해서 주요 국제노동 관련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사업을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투기업과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를 지원해 나가고 ILO 협약 기준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해외 노동동향 등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동행정의 효율성 제고 방안입니다.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등 8대 중점과제 추진에 노동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등 노동행정을 혁신하고 노동행정의 고객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근로시간 제도개선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5월17일 노사정위원회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10월23일에 근로시간단축 관련해서 기본원칙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5일에 공익위원안 등 특위활동보고서 채택 후에 실무 및 고위급 협상을 통해서 합의도출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잠정합의에 근접하기도 하였지만 노사 모두 조직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로 인해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사정위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12월12일 협상재개를 하였지만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사정위원회에서 조속히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의 논의결과에 따라서 입법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실업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실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말 현재로 청소년 실업률은 8.1%, 실업자 수는 38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수준보다는 크게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전체 실업률 3.4%의 2배를 초과하는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실업은 첫째로 대졸자의 과도한 공급, 교육내용과 산업수요의 괴리, 경력직 중심의 채용, 수시채용 등 기업의 채용관행이 변화됨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에서는 작년 12월17일 청소년실업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5552억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30만 명에게 단기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증장기적으로는 교육부문과 산업현장의 연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청소년 직장채용프로그램에 4만 4000명, 공공근로사업으로 연간 4만 7000명 등을 통해서 총 16만 명의 청소년에게 취업 또는 연수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유망분야 등의 훈련에 8만 6000명, 인력부족직종훈련에 1만 명 등을 통해서 총 14만 명의 청소년에게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작업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부족직종 훈련수당을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또 증장기적으로 교육부문과 산업현장의 연계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년실업대책 T/F팀을 통해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노동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현안사업장 동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도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 관련입니다.

최근 동향을 말씀드리면 정부입법으로 철도와 가스공사의 민영화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발전산업·지역난방공사·한국전력기술이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서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반발하면서 공투본을 조직하고 관련법 국회상정 시 연대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말씀드리면 2월 임시국회에서 민영화 관

련법안의 처리일정에 따라 철도를 중심으로 연대파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철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연대파업이 강행될 경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에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서 파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파업대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우자동차 동향입니다.

작년 11월2일부터 금년 1월22일까지 15차에 걸쳐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사 측은 GM이 요구하는 수준의 단협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노조 측은 정리해고자 복직에 중점을 두고 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사 양측에서 단협개정안과 정리해고자 문제 등 현안사항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핵심쟁점에 대해서 진전이 없는 상황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20일부터 부평공장 인근 산곡성당에서 농성 중이던 김일섭 위원장 등 5명이 금년 2월5일에 자수했습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이 교섭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다소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 양측은 단협개정안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노사 입장을 계속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이니 합의도출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지 않겠으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노사 모두 GM과의 본계약 체결 이전에 단협 갱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GM과의 본계약이 임박한 시점에 단협 개정과 정리해고자 처리 문제를 일괄타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GM과의 본계약 체결 전까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사를 집중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002년도 정부입법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노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용보험법으로 주요내용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고용촉진법인데 고령자인재은행 지정과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했고 여기에 보완적으로 고령자 등에 대한 고용차별금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적합직종 우선채용 대상기관을 현행 국가·지자체,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마

는 고용·산재보험징수법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보험료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 제조·수입자에게 안전을 위한 검사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기획관리실장 수고했는데 하나만 물읍시다.

38쪽에 청소년의 연령 상한선이 29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OECD 국가의 청소년은 24세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한번 했었지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예.

○委員長 李允洙 그런데 왜 이것이 아직 29세로 되어 있어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군대에 갔다 오는 기간을 감안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이 통상적으로 29세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업대책을 짜는데 편리한 통계라서 29세까지로 합니다. 그런데 통계학상으로는 24세까지로……

○委員長 李允洙 실장, 지금 내가 여기서 시간 때문에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이것 잘못되었어요. 나중에 따로 설명을…… 이것 위원님들이 지적할는지 몰라요.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OECD 기준으로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국회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시간은 1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朴仁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仁相 委員 우선 장관님 새로 취임하셔서 축하합니다.

앞에 인사를 하실 적에 노동운동 20년, 15대 국회의원, 산하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노사문제를 열심히 푸시겠다고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믿고 장관이 소신껏 발로 뛰는 행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노동문제 역시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 중에서 현안보고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좀 예민한 부분은 빼버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 하나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속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구속노동자가 몇 명입니까? 밑에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보고받았습니다. 현재 구속자는 45명입니다.

○朴仁相 委員 민노총 보고를 보면 46명으로 거의 비슷한데 1명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자 숫자를 보면 문민정부 5년 동안 1주일에 2명 풀인 632명의 노동자가 구속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국민의 정부 4년 동안 구속된 노동자가 1주일에 3명 풀인 690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제가 노총 시절에 외국 노동계를 방문할 때마다 늘 한국은 아직도 노동인권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국제 노동계가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 연대의 날 행사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개국 44개 도시에서 연대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ILO 이사회 기간에 결사의 자유위원회를 열어 구속노동자 석방 문제를 심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4월에는 제가 알기로는 OECD 안에도 노동기구가 있는데 여기서도 심의를 하면서, 지금 국제금속노련 말렌탁치 사무총장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2차 국제연대활동을 벌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允洙 위원장, 金樂冀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국의 구속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노동자 인권유린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주일에 3명 풀로 노동자가 구속되는 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인권유린이 난무하는 나라, 국제노동계로부터 비난받는 나라 이런 사항을 두고 노동인권 후진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제노동계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구속된 노동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2월3일 현재 구속된 노동자는 4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구속자가 그동안 많이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IMF 이후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이 대단히 많고 특별히 2001년도에 대우자동차 또는 화성 3사 이런 데에서 구속자가 4, 50명씩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많이 잡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자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해서 구속되거나 기소된 사건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쟁의나 시위를 현행법을 지켜가면서 했다기보다는 그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구속사태가 많이 발생된 것이 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朴仁相 委員** 장관님, 내용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87년 이후에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때 민생과 경제치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사실 시대적으로 상당히 변화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공안부 인력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고 업무범위가 광범위하고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안사건이 전체 형사사건의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전체 검사 중 공안검사의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이것을 내 봤는데 전체 검사 1193명의 11.5%인 137명의 검사가 공안사건 전담검사입니다. 본 위원은 1.6%의 공안사건 비율에 11.5%의 공안검사 비율이라고 한다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려 보면 결과적으로는 노동·학원 등의 사안을 공안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때문인데 이것이 국민의 정부 인권정책하고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대내외적으로 억압적 국가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장관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구속자문제 특히 민주노총은 段炳浩 위원장,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에서도 文成賢 위원장, 위원장들이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관님께서 구속자를 어떻게 해결해 내실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노동부장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빠르게 풀어 나갈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勞動部長官 方鏞錫** 산적한 노동현안 중 구속노

동자들의 문제가 주요사안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어제 제가 국제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을 만났는데 그분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운동이 합법적으로 할 수 없었던 권위주의적인 시대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위반이라든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속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길이 다 있습니다. 노동운동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1월24일 金大中 대통령께서 노르웨이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노동계에서 지금이라도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하는 약속만 한다면 지금 구속된 노동자들을 석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노동계도 운동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朴仁相 委員**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금년도의 국가대사를 네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 문제의 해결을 잘못하면 국가대사에도 노동계의 저항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새로 부임하신 장관님께서 이 기회에 화합적 차원에서 또 산업안전을 위해서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구속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方鏞錫** 노력하겠습니다.

○**朴仁相 委員** 다음은 행자부 지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자율적 교섭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그렇습니다.

○**朴仁相 委員** 지난번에 장관님이 합의를 같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조가 파업 직전 노사 간에 극적으로 합의해서 파업까지는 유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자부 지침을 요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하철공사 경영진의 얘기를 인용해 보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론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과거만 해도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2년 전부터 행자부가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것이 사용자들의 독백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의 독백은 이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이 금과옥조라면 회사 측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똑같은 말을 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경영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실정에서 교섭해 봤자 아무 필요도 없다.” 이것이 노동조합 측의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행자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경영불신 시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기업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 사전적·재정적 통제가 불가피하다.” 2년 전부터 이렇게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100개 지방공기업 중 94개 공기업이 행자부 지침을 수용했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朴仁相 委員** 그런데 서울시 산하 6개 공기업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자부 지침의 방향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94개 지방공기업이 행자부 지침을 틀림없이 거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는 악순환의 근원을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방법은 무엇이나, 행자부 지침을 개선하든지 보완하든지 아니면 철폐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결과적으로 싸우다가 벼랑 끝에 와서 마지막에 들어주는 형태의 교섭이라면 서로 부추기는 교섭밖에 안 된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지금 서울시 산하에 있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기업, 이를테면 투자기관이라든지 보조기관에 대한 지침은 다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내리는 지침도 있고 행자부에서 내리는 지침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업의 책임자가 이 부분을 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다른 공기업에 잠시동안 있었습시다마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나 노동부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 정부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이번에 지하철노조에서도 투쟁하는 과정에서는 지침을 거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타결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위반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행자부의 지침을 준수하는 범주 내에서 노사 간에 자율적 합의를 보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朴仁相 委員** 장관, 그렇게 얘기하면 이번에 임금인상할 때 승급 분은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금액으로 따져보면 승급분이 1.8% 정도인데 애당초 서울시에서는 총액을 6% 기준 내에서 묶는다는 결론이어서 싸움이 붙은 것인데 6%는 인정해주고 승급분은 자연승급으로 놔두었지 않습니까? 아주 미묘한 것 같지만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통계적으로 같이 묶을 것이 아니고 승급분은 자율적으로 승급하도록 만들어 두고 총액 얼마, 임금인상…… 이것하고 엮어놓으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자연인상 승급분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풀린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노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朴仁相 委員** 물론 이 부분은 한 부처가 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재정부, 노동부 전체가…… 이 지침 부분은 절대적으로 보완하든지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똑같은 것은 반복되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신임 장관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것을 보완하든지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뭔가 합리적으로 고쳐서 노사가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연구하겠습니다.

○**朴仁相 委員** 다음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원래 16대 국회가 개헌할 당시 정규직 실태방안에 대해서는 정책자료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월29일 인크루트가 채용계획을 세운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의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의 상황이 어떻게 더 나빠지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기업의 총 채용인원은 4만 7521명이고 이 중 비정규직 채용은 전체의 64.2%인 3만 488명이며 정규직 채용은 35.8%에 해당하는 1만 7033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유통이나 택배, 무역업 분야의 경우 신규채용은 70%인 2만 6897명이 비정규직 채용으로 고용될 것으로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기, 전자, 정보통신, 금융 분야의 경우도 각각 48%, 42%, 52%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데 고용조건은 더 나빠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을 것인가 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장관님이 오늘 보고하는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격차를 줄이고 소외된 부분을 보완해서 가져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方鏞錫** 노동부에서는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실·국에서 역할분담을 하여 이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에서 하기에 앞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특위가 이미 구성되어 가동 중에 있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잠깐 주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에 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구체적인 복안을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마련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仁相 委員**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새로운 장관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해서 비정규직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方鏞錫**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朴仁相 委員**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樂冀** 朴仁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晟祚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晟祚 委員** 金晟祚 위원입니다.

오랜 노동활동을 하시고 국회의원 등 요직을 거치고 장관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출신의 장관에게 거는 기대

또한 다른 위원들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장관께서 노동행정을 남은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 중인 주5일 근무제도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와 관계없이 노동부 안을 만들겠다 혹은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 번 왔다갔다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한을 주어야 한다…… 저는 시한을 주어야 한다는 이 압력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 근무제에 대해 빨리 결정해 달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勞動部長官 方鏞錫** 지금 말씀드릴까요?

○**金晟祚 委員** 예, 말씀해 보십시오.

○**勞動部長官 方鏞錫**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만이 주5일 근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5일 근무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노사정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노동부장관으로서도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법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와 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하다가 잠시 중단되었지만 적어도 구정이 끝나면 다시 협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결과가 생산은 줄고 소비가 늘어난다는 풍토로 귀결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사간에 이 문제에 대한 양보의 선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晟祚 委員** 그러니까 노사 간에 세부사항까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주5일 근무제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金晟祚 委員** 그러면 노사정위원회에 결정시한을 주어야 한다는, 그 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労働部長官 方鏞錫** 그것은 작년부터 실시되어 왔는데 본래는 작년 말까지 이런 부분이 해결되기를 기대했지만 그것이 해를 넘기고 또 노측에서는 한국노총의 전국대의원대회가 어제로 끝났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안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전국대의원대회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집행부에 의해서 새롭게 협상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金晟祚 委員** 그래서 그 시한을 두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노사정위원회의 바른 활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労働部長官 方鏞錫** 예, 그렇습니다.

○**金晟祚 委員**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朴仁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장관께서 金大中 대통령께서 비폭력적이고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약속한다면 지금 구속되어 있는 민주노총 간부들을 즉각 석방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왜 이것을 약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쉬운 이것을 왜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비폭력적이고 합법적인 것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왜 그런지 분석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労働部長官 方鏞錫** 안 하는 이유에 대한 제 생각은 있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金晟祚 委員** 金大中 정부가 근로자도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하겠지만 사용자 측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처벌을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근로자 측에서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관대하게 대해 오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을 하고 난 이후 근로자 측 처벌건수와 사용자 측 처벌건수를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労働部長官 方鏞錫** 사용자 처벌건수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바가 없고 사용자들이 불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임금체불을 했든지 하는 것에 대한 것

은 저희들이 건수를 알고 있지만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충돌적인 사건으로 사용자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아직 없습니다.

○**金晟祚 委員** 근로자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보고 받은 바가 없다라는 이러한 노사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용자 측이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을 하고 있어도 우리 노동행정 관청도 그렇고 사회의 분위기…… 또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노동부에서는 지금 마라톤 대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드컵 기간 중에는 노사분규가 없어야 한다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근로자 측을 압박하는 듯한 어감으로 그런 분위기로 와 닿는 것이, 저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그들에게는 더 심하게 느껴질 것 아닙니까?

장관께서는 노동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장관이 되셨으므로 좀더 근로자 측에 서서 근로자를 위한 장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労働部長官 方鏞錫** 노동부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그도 역시 예외 없이 법적으로 엄단할 생각입니다.

○**金晟祚 委員**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労働部長官 方鏞錫** 예, 알겠습니다.

○**金晟祚 委員** 다음은 2002년 업무보고에 보면 고용보험의 수혜범위가 4인 이하의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에 종사하는 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5인 미만의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해서 그들에게 고용보험의 혜택을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행정력의 낭비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용보험 혜택이 그들에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등으로 확대하기 전에 최근 5인 미만의 제조·서비스업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労働部長官 方鏞錫** 현재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金晟祚 委員** 아니요, 지금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을 올

하반기에 한다면서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시행령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金晟祚 委員** 이것을 확대하기 전에 5인 미만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했습니다. 하고 있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차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晟祚 委員** 차관님, 지금 하고 있지요?

○**勞動部次官 金松子** 예.

○**金晟祚 委員** 새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서 전체 대상 중에 징수한 실적이 몇 %입니까?

○**勞動部次官 金松子**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기억 못 하고 있는데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金晟祚 委員** 좋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징수액이 얼마이고 또 징수대상 중에서 얼마만큼 징수해서 지급액은 얼마이고 하는 이 숫자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는 차관님이 말씀 안 해도 대충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장관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복지행정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행정력의 낭비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오히려 그들이 내는 보험료보다도 혜택받는 것이 평균을 내면 더 적을 것이다 따라서 좀더 행정력이 확보되고 나서 이러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올 연말에 실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라는 제 의견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이 부문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확대 시행하는 법안의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인력을 좀더 보강해서라도 보험료를 낸 근로자들이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金晟祚 委員** 장관님,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처음 할 때도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앞으로 행정력을 더 확충·보완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해 놓고, 하다 보면 굉장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이름하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이것 사실상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입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金晟祚 委員** 1인 이상 4인 이하, 전 업종 이것은 전 국민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인데 과연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행정력으로 가능할 것

이나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1/4분기에 공공근로사업 등 주요사업예산을 집중 배정하겠노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 1/4분기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한 예산이 작년 전체 예산 중 얼마 정도 됩니까?

담당국장님 나와 보세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秀** 고용총괄심의관 鄭鍾秀입니다.

○**金晟祚 委員** 국장님, 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1/4분기에 작년보다 더 획기적으로 예산을 투여한다면 몇 % 더 투여할 것이냐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더 늘었으며 그리고 작년보다 1/4분기에 집중적으로 더 늘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秀** 작년도 1/4분기에 투입한 금액은 2629억 원이었습니다. 금년도 1/4분기에는 2302억 원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전부 합한 공공근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金晟祚 委員** 그러면 작년 대비 몇 %입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秀** 퍼센티지로는 숫자를 정리 안 했습니다마는 2629억에서 2302억 원으로 약 300억 정도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金晟祚 委員** 그러면 1/4분기에 공공사업 등 주요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것이 아니네요, 늘 해오던 대로 하고 있다 이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을 올해 업무보고서에 넣은 이유가 됩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秀** 공공근로에 대한 규모를 작년도 9207억 원에서 금년도에 6432억 원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금액에서는 줄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4분기에는 총 물량의 36%를 배정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晟祚 委員** 국장님, 작년도 9000여 억이 당초 예산입니까? 추경까지 합친 것 아닙니까? 추경까지 합친 작년 총예산 중 1/4분기에 투자한 것을 비율로 뽑았고 올해는 추경을 안 했으니까 당초예산 중에서 뽑은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저에게 주면 추가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실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金晟祚 委員**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樂冀 金晟祚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明憲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明憲 委員 한두 가지 간추려서 질의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실업자에 대한 취업 문제, 특히 청소년 문제 그 중에 대졸자 취업 문제는 여기에 언급이 안 되었는데 대졸자들이 취업이 안 되어서 다시 전문대학이니 혹은 기능대학에 재취학하는 예가 많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알고 있고 또 대졸자들이 근자에 와서 중소기업에 취업이 되고 있다는 희보도 듣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위한 눈높이 조절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이 그와 같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 부분을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勞動部長官 方鏞錫 담당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젊은 학생들이나 졸업자들이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는 사유를 공단을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 가장 큰 원인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제일 큰 문제가 중소기업체는 작업환경이 아주 좋지 않고 또 자기 집과 회사와의 통근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자기가 요구하는 임금과 실제 기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작업환경개선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CLEAN 3D사업 등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 통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체가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를 구입할 경우나 기숙사를 설치할 경우……

○崔明憲 委員 알겠어요. 그 내용은 아는데 내가 알고자 하는 핵심은 중소기업이 그와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자체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중소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신규사원들을 채용해서 훈련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아니면 모기업체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훈련계획에다가 하청업체를 포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崔明憲 委員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실상을 보면 대졸자들을 받아들이는 가운데서도 순수 산업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보다도 경력자들을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던 말이에요.

대졸자 가운데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의 통계를 노동부 자체에서 잡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근속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들어갔다가 그러한 불만족스러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도중에 취업을 포기하고 퇴직하는 인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는 직업훈련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마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직업훈련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勞動部長官 方鏞錫 우리 부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북한 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라서 훈련 인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50명이었던 것을 2001년도에 216명으로 늘렸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늘리고 특별히 북한 이탈주민들을 전담하는 취업보호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崔明憲 委員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근자에 와서 북한 이탈주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2001년11월18일 현재 북한 이탈자가 1677명인데 이 16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1999년, 2000년, 2001년 이 2, 3년 사이에 대폭 증가되었고 이 사람들의 연령을 보면 대개 40대까지가 전체 이탈주민의 82% 이상을 지금 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재 취업하고 있는 곳은 순수 단순근로나 노동에만 취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차를 한다거나 하여튼 잡다한 일인데 이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사람들에게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노동부가 좀더 직업훈련을 시키고 직업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실상에 맞는 또 그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부가 주관이 되어서 안성에 하나원이라는 이탈자수용소라고 할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하는 과정

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시설능력이 1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현재 어느 정도냐 하면 250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을 다시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기왕에 노동부에서 그러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원에도 한번 가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崔明憲 委員** 그다음에는 주요현안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작금의 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공공사업체에 대한 민영화 문제로 해서 앞으로 노사분규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는 두 항공회사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3, 4월에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외형적으로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형태이고 쟁점사항으로는 9명에 해당되는 지난번 파업으로 인한 해고자들의 문제가 현재 걸려 있고 그 중에서 7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은 계류 중이어서 저희 담당부처로 하여금 노사 간에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崔明憲 委員** 그래서 여야 의원들 몇 분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입법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항공업계의 공익사업 포함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方鏞錫** 지금 노사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을, 지난번 항공사 파업이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주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러한 중대한 행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러한 법안을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의 도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금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공사가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정부가 막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운동의 흐름, 성격 이런 것

들을 볼 때 과연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가한다고 해서 그들이 파업을 안 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지만 가능한 한 법적으로 만들 때 당사자들인 노동자들의 반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나 이런 데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적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금년도에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만약 파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 노동부는 모든 법과 인력을 동원해서 단호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崔明憲 委員** 우리 方 장관의 소신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끝으로 정부 내에는 사회분야 부처 혹은 경제분야 부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노동부가 현재 속하고 있는 부라고 할까요, 경제부처에 속합니까, 아니면 사회부처에 속합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둘 다에 속하고 있습니다.

○**崔明憲 委員** 알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樂冀** 崔明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洪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信 委員** 金洪信입니다.

먼저 산재의료관리원 산하의 진폐지정병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아직도 진폐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金洪信 委員** 제가 작년 여름에 이쪽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진폐환자는 치료법이 현재 없는 상태이지요? 거의 불치병에 가깝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장관께서는 산재의료관리원의 진폐지정병원 의료인력현황을 시간은 짧지만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제가 취임한 지 이제 열흘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현황을 잘……

○**金洪信 委員**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심각

한데 태백중앙병원의 경우에는 단 2명의 의사가 진폐환자 366명, 외래환자 40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동해병원도 마찬가지로인데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하루에 환자들을 다 보려면 의사 1명에 입원환자 183명, 외래환자 20명을 진료해야 되는데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 화장실도 안 가고 2분36초당 1명의 환자를 봐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수치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勞働部長官 方鏞錫** 그렇습니다.

○**金洪信 委員**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의료인력이 이렇게 부족한데 진폐환자들이 진료를 제대로 받기는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勞働部長官 方鏞錫** 예, 그렇습니다.

○**金洪信 委員** 제가 직접 환자들을 만나고 환자가 죽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관께서는 노동전문가이셨으니까 종합병원의 의사정원기준을 알고 계시지요?

○**勞働部長官 方鏞錫** 지금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金洪信 委員** 의료법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의사정원은 의사 1명당 입원환자 20명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태백중앙병원과 동해병원은 19명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 2명이 19명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을 현재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지요?

○**勞働部長官 方鏞錫** 예.

○**金洪信 委員** 이렇게 의사가 부족한 이유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태백·동해지역은 의사들이 가기 싫어하고 임금수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勞働部長官 方鏞錫**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실태파악을 하시고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한 이후에 필요사항을 개선해서 의료인력을 충원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폐환자들의 고통을 덜 수가 있습니다. 장관께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겠습니까?

○**勞働部長官 方鏞錫**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金樂冀 간사, 李允洙 위원장과 사회교대)

○**金洪信 委員** 또 한 가지, 진폐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동해병원, 정선병원의 경우 허가병상을 초과해서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확인은 못 하셨지요?

○**勞働部長官 方鏞錫** 예.

○**金洪信 委員** 보건소에 있는 허가병상 수를 보면

동해병원은 341개, 정선병원은 253개인데 실제 운영 병상 수는 각각 385개, 267개입니다. 동해병원은 44개, 정선병원은 14개의 병상을 더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자료에 보면 참고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의료법 위반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병상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지역보건소에 병상 허가신청을 하고 늘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도 지적해 두고 동해병원의 입원환자를 보면 358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허가병상 341개를 초과한 17명은 어디에 입원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령환자이거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병원에 없는 환자를 부풀려 신고했거나 아니면 병상이 없는데 어디에 입원해 있을까…… 수치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 자료를 보고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임시병상에 입원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임시병상에서는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법을 어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에 관한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의 입원환경을 차후에 확인해서, 이것은 지금 조사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재환자를 진료한 이후 병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하는데 공단은 적정한 진료를 했는지 심사 후에 청구기관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공단은 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허가병상을 초과해 청구했는지를 심사하는데 건강보험 같으면 허가병상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현지 심사대상이 되어서 상시감독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초과병상에서 청구한 모든 급여를 반환해야만 합니다. 이 기관들은 분명히 허가병상보다 더 많은 입원환자 요양급여를 청구했을 텐데도 부당청구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고 산하기관이라고 눈감아 주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의 청구내역 심사기능이 부실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勞働部長官 方鏞錫** 잘 모르겠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면 파악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영터리 산재 요양급여가 지불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심사를 못 해서 잘못 나간 돈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것도 조사를 하셔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산재의료기관이 의료법까지 무시하고 부실하게 진료하고 있는데 어떤 민간의료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주시고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정토록 해 주시고 부정 사례가 있을 경우는 문책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洪信 委員**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이 없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실태조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의료원의 두 가지 위법사실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의료법의 의사 수를 지키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대로 허가병상 수를 초과해서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관리·감독할 공단과 노동부에서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법사실과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 장관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사과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고 조치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方鏞錫**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洪信 委員** 장관께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모든 산재의료기관에 대해 관련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국정감사나 다른 상임위 때 문제가 크게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함께 장관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부정수급자 관련입니다.

실업대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실직상태여야 하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金洪信 委員** 사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실업대책 혜택을 받을 당시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요? 두 가지 이상 실업대책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는데, 이것이 실업대책의 대원칙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99년1월부터 올 1월 말까지 실업대책 DB, 국세청 DB, 국민연금 DB에서 중복으로 검색된 건이 총 34만 1693건이나 됩니

다.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들 DB 간에는 중복검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중 실제로 중복수혜를 받았다고 확인된 부정수급 건수가 총 1만 4597건이나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실직상태도 아니면서 공공근로를 받았던 부정수급 건수가 6356건 둘째, 실직상태가 아니면서 직업훈련을 받았던 부정수급 건수가 376건 셋째,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건수가 2475건 넷째,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공공근로에 참여한 건이 388건 다섯째, 실업상태도 아니면서 실업급여를 받았던 건수가 5002건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조사 중이거나 미확인 건수가 13만 1832건이므로 앞으로 중복수혜를 받았다고 확인될 부정수급 건수는 앞의 조사에 따라도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金洪信 委員** 부정수급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는데 그동안 노동부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이 무엇이나 하면 실업자 DB 구축, 국민연금 DB와 국세청 DB와의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자료가 있는데 담당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洪信 委員** 좋습니다. 아마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텐데 노동부가 추진했던 노력들이 부정수급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업자 DB인 실업급여·직업훈련·공공근로 DB 간에는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므로 중복수급이 원칙적으로 차단되어야 함에도 총 2863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실업자 DB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관리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아까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지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秀** 고용총괄심의관 鄭鍾秀입니다.

저희 노동부 DB는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서로 교차해서 확인하려면 국세청 DB라든가 국민연금 DB를 같이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 DB를 활용하는 데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金洪信 委員** 잠깐이요, 실업자 DB인 실업급여·직업훈련·공공근로 DB는 어디서 관리해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秀** 노동부 소관입니다.

다.

○**金洪信 委員** 노동부에서 하면 국세청이나 국민연금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만 가지고 2863건의 중복수급은 차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노동부 내부의 DB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왜 국세청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秀** 저희들이 물론 서로 연계해서 체크가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데요.

○**金洪信 委員** 그런데 이 체크가 가능한 부분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중복수급 2863건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秀** 예.

○**金洪信 委員** 노동부 내부 거예요. 그렇지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秀** 예.

○**金洪信 委員** 제가 이 부정수급건과 관련하여서 2001년6월 시점, 2001년9월 시점 또 2002년1월 시점을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살펴보면 2001년6월 시점에 부정수급 건수는 8915건 또 2001년9월 시점의 건수는 9995건, 2002년1월 시점에는 1만 4597건이나 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부정수혜자가 발생하고 있거나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부정수급건이 확인된 것일 텐데, 아니면 동시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방지 사전예방 및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제가 지금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는데 장관께서 이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金洪信 委員** 하여간 이 점도 오늘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알겠습니다.

○**金洪信 委員** 관련하여서 2001년6월 당시 실제 부정수혜자에 대한 환급조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산출할 수 없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조치를 실시하겠다.’ 이런 서면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환급조치에 대한 답변은 동일합니다. ‘환수건수와 환수금액은 파악하기 곤란하다. 각 지방관서에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실업대책 부정수급 문제는 제가 이미 예결위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임에도 개선된 행정조치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지방관서는 노동부 소속기관 맞지요, 그렇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金洪信 委員** 심지어 지방관서에서 지원금 환수 조치를 하고 있는데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金洪信 委員** 이것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洙** 고용총괄심의관 鄭鍾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를 예를 들면 환수는 노동부가 하지 않고 노동부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가 전부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는 각 공공근로 시행주체가 하고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면 노동부에서 파악은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洙** 노동부가 물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시행주체와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金洪信 委員** 노동부의 직업훈련 DB·공공근로 DB를 중복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또 직업훈련 DB와 국세청 및 국민연금 DB를 중복검색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洙** 예.

○**金洪信 委員** 이 사실을 알면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洙** 예.

○**金洪信 委員** 그런데 지금 제대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지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洙** 부정수급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주체가 환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金洪信 委員** 종합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洙** 예.

○**金洪信 委員**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부정수급자 건수를 산출하는 목적은 통계산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洙** 예.

○**金洪信 委員** 부정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행정조치를 해서 실업대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洙** 예.

○**金洪信 委員** 저소득층 자활대책 등 준비를 많이 했는데 나머지는 시간 때문에 추가질의할 테니까 장관께서 이 대책에 관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金洪信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樂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樂冀 委員** 우선 장관께서 노동부장관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익히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노동운동도 하셨고 그 분야에 대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장관께서 노동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실 것인지 하는 문제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문제,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문제, 비정규직 법적 보호문제 등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까 존경하는 金晟祚 위원께서 시간단축에 관한 문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勞動部長官 方鏞錫** 저희들 노동행정은 금년도가 현 정부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노동정책에 대한 것을 마무리짓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노사관계 현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노사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적인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부족합니다마는 가능한 한 현장을 비우지 않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그러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이미 OECD에 가입할 때 공무원단결권에 대해서 약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용상에 있어서 시기문제라든지 범주의 문제라든지 단체교섭권 등에 대한 확대 적용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현재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미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단결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하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병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樂冀 委員** 공무원 노동기본권문제는 이미 98년 2월에 노사정 간에 원칙적 합의를 본 사안입니다. 장관께서도 그 합의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그렇습니다.

○**金樂冀 委員** 국민여론을 수렴하신다고 하는데 국민여론을 어떤 방향으로 수렴하실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교원노조 같은 경우를 되돌아보더라도 그 과정에서 공청회나 TV에서 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기본권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을 밟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을 국민들에게 도출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樂冀 委員**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시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그렇습니다.

○**金樂冀 委員** 그다음에 비정규직 보호문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가 이 부분에 대한 팀을 구성하고 있고 특별히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전문기구를 구성해서 토의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金樂冀 委員** 비정규직 문제는 IMF 이전에 이미 통계상으로도 나온 사실입니다마는 42% 정도에서 지금 53~54%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는 나라는 비정상적인 사회이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용자 측이나 이런 분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장합니다마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비정규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장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도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묻는 것인데 보호되어야 되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노사정위원회에서 그 점 때문에 기구를 만들어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樂冀 委員** 알겠습니다.

불법파견근로자 보호대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2년 이상 사용한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가 아닌 사용업체의 사용자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고용의제라고 합니다.

노동부는 이 규정에 근거해서 불법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2년 이상 일할 경우에는 사용업체에서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동안 적발된 불법파견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조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1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와 정반대되는 취지의 판정을 내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金樂冀 委員** 중앙노동위원회는 2년 이상 불법파견근로를 했다 하더라도 법 제5조에 의한 근로자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까지 고용이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행정소송에서도 중노위의 이러한 판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26개 파견허용직종이 아닌 사람들은 수십 년을 불법파견으로 일해도 고용보장조차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용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불법파견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노동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법파견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출된 업무보고에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한 줄의 언급조차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없습니다.

○**金樂冀 委員** 이것은 노동부가 불법파견감시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장관께서는 불법파견 근절대책과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方鏞錫** 중앙노동위원회나 행정법원에서 불법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법파견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세우는 것에 전력하려고 합니다.

○**金樂冀 委員** 이것을 언제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우선 대법원 판결도 중요하지만마는 노동부로서는 현재 불법파견 근절대책을 위해서 노력해야지요. 감시업무를 해야지요. 감시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지방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감시업무를 해야지 업무보고에 감시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이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노동부가 일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이 자료에 명시하지 못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지난해 5월 주식회사 캐리어, 청호 등 무허가 파견근로업체의 근로자들을 파견 받아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93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한 바도 있습니다.

○**金樂冀 委員** 그것은 본 위원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주 캐리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그렇습니다.

○**金樂冀 委員**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새해 들어 업무보고를 하면서 과거에 했던 업무를, 여러 가지 사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감시업무를 해야지 그것을 하지 않고 전혀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장기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金樂冀 委員** 불법파견 근절대책과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중장기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서 서로 불행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성보호제도의 활성화대책에 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과 관련된 것입니다.

모성보호 및 직장가정의 양립지원이라고 해서 산전후휴가제도의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육아휴직급여의 수혜목표와 예산이 산전후휴가는 12만 1000명에 1232억, 육아휴직급여는 7만 3000명에 357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시행 후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지

난해 참담한 실패를 겪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올 1월 한 달 동안의 실적을 보면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고작 52명, 육아휴직급여는 134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제도시행이 일천하기 때문에 홍보부족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실적이 예상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 후 90일을 사용한 이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금년 2월부터 본격적인 급여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樂冀 委員** 물론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이 감안됩니다. 가정해서 이 추세대로라면 올 한 해 동안 출산휴가는 고작 600여 명, 육아휴직급여는 1600여 명 정도만 혜택을 보게 된다는 통계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있습니다.

○**金樂冀 委員** 그 통계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장려금제도에 대해서 장관께서 알고 계시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金樂冀 委員** 이것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둔 사업주에게 매월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육아휴직급여와는 달리 고용안정사업 개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장려금은 육아휴직급여가 유급으로 바뀌기 전부터 있었던 제도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그렇습니다.

○**金樂冀 委員** 이 장려금 지원실적을 보면 2001년 한 해동안 연 인원 3136명분이 지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을 유급화했다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제도의 조기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方鏞錫**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토론했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분석한 것들이 있는데 담당국장인 여성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담당국장 보고하세요.

○**勞動部勤勞女性政策局長 申洺** 근로여성정책국장

申洺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행한 것이 11월1일부터 이제 3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려금의 지급과…… 즉, 급여가 나감으로 해서 더 많은 차이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업무중단으로 인해 본인들의 능력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고 저희가 법을 고치면서 신분보장이란지 휴가기간 동안에의 해고방지 그리고 원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까지는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조조정문제 때문에 약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홍보방법을 강화하면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한다면 대체인력이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金樂冀 委員** 수혜목표만 잔뜩 잡아놓고 실적도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제도를 시행하면서 목표와 실적이 정비해서 나가야지 반비례하면 안 되지요?

○**勞動部勤勞女性政策局長 申洺** 예.

○**金樂冀 委員** 알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에 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산업연수생제도 개선대책을 확정하고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과 새로운 외국인력제도 도입에 관한 노동부의 입장 그리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내용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金樂冀 委員** 그리고 두 번째로 고용안정센터 등 정부기관에서 사용 중인 청소년 인턴들의 현황과 특히 고용안정센터의 경우 인턴제 도입 이후부터 지급까지 모든 인턴사용실적과 인턴약정서, 이들의 정규직 채용여부, 채용된 경우 그들의 이력사항 등을 2월 말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알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允洙** 金樂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承哲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哲 委員**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거친 노동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제는 한 나라의 국무위원으로서 취임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반면 노동행정 경험이 좀 일천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金松子 차관님께서 그동안 섬세하고 배려 깊은 노동행정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잘 조화해서서 환상의 노동행정을 이 정권에서나마 마지막으로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에 있을 때 중앙경제사라는 출판사에서 ‘인사노무진단’이라는 책자를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노무진단제도에 대한 도입을 절실히 요청했고 그때 노동부에서 노무진단에 관한 프로그램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거기에 자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 제도가 빠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호지부지되어 있다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서 노무관리진단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勞動部次官 金松子** 맞습니다.

○**李承哲 委員** 담당자 잠깐 나오세요.

예방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10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 양측이 참여한 노무관리진단을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가토론회까지 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노사 양측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노무진단을 받은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성과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무진단에 대해서 응답자의 62%가 노사문제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했고 38%는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이 상당수 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 기회에는 다시 한번 노무관리진단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도 75%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맞습니다.

○**李承哲 委員** 노무관리진단 신청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노사분쟁 예방 및 개선이 39%, 노사현안 해결이 22%, 인사제도 등 제도개선 18%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노무진단이 노사문화를 새롭게 형성하는 좋은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承哲 委員**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李承哲 委員** 따라서 이러한 노무진단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노조가 있는 일정규모의 기업체 또는 노사분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법인의 회계감사처럼 노무관리진단을 받도록, 다시 말해서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노사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근로자들의 노동의 질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무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전체적인 사업장이 아니고 노조를 가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노사분규 다발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체들은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노무관리진단의 전제는 우선 그 회사의 노사가 노무관리진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협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면서 제안이 있을 때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거나 자기들의 안전부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도 10개 기업의 노무진단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초에는 수십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려다가 결국은 우리 노무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노사 동의를 받아와라 해서 10개 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노사가 받아도 좋다, 겸허하게 받겠다는 쪽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확실히 몇 인부터 몇 인까지는 그렇게 규모를 정해서 한다든가 하는 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李承哲 委員** 감사, 조사를 받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받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몇 개 기업이나 되겠습니까? 노사관계의 기본은 노사자치주의원칙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행정이라는 나름대로의 국가적인 권력의 작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노동부에서 노무관리진단제도에 관한 특별한 법안 내지는 제도화를 통해서 부실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지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계감사가 제도화되어 있는 것처럼, 회계감사는 자율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입니다. 선진국에서 노무진단을 제도화하고 입법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노무관리진단제도가 법제화되어서 정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方鏞錫**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1994년도인지 1995년도에 현대자동차에서 분규가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쪽에서 노동조합이 찬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이 진단의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무관리진단같은 경우는 그 구성원이 누구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조사방법이라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노사 간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 부분을 합의해 가지고 선정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사 간에 합의만 되어서 실시한다면 대단히 좋은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承哲 委員** 필요로 하는 제도이고 합의가 힘들니까 국가권력의 개입이 다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勞動部長官 方鏞錫** 그것이 대단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강제에 의해서 한다고 할 경우 노사자율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李承哲 委員** 그런 원칙이라면 노동행정 자체도 필요 없지요. 왜 노동부가 안전관리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도하고 점검하고 조정을 합니까? 노사자율주의원칙에 의한다면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노무관리진단제도가 도입되어야 기업이 스스로의 자정능력과 자율노력에 의해서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담당공무원과 장관님께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과 대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勞動部長官 方鏞錫** 저희도 이것을 연구해 보겠

습니다.

○**李承哲 委員**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추진실적 및 평가에서 보면 장애인고용촉진제도 개선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이라는 항목 아래 여러 가지 시책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 장애인고용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가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당위성은 이념적으로 장애인이 인권과 존엄성을 차별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평등의 논리, 인권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91년도부터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서 장애인고용률은 10년 전에 비해서 2배가 넘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장관님께 질의드립니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1년6월30일 현재 의무고용률이 1.51%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李承哲 委員** 그러면 이렇게 저조한 상태로 계속 놔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향후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方鏞錫**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법에 정해져 있는 비율을 채우도록 추구하고 있습니다.

○**李承哲 委員** 추구하고는 것만으로 됩니까? 여태까지 추구하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저조합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많이 진전되었습니다.

○**李承哲 委員** 진전되어서 1.51% 아니에요? 나라에서 2%로 정했는데 법정고용비율 2%도 못 채우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민간사업자에게 2% 이상 고용하라고 독려할 수 있습니까? 말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여기에서 먼저 3%, 4% 해 놓고 ‘당신들은 최하 2%를 지키시오.’ 하면 민간사업자들이 지킬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안 지키는데 우리가 뭣하러 지키느냐고 하면 무슨 할말이 있어요? 계속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촉구만 하시면 안 됩니다.

○**勞働部長官 方鏞錫** 예.

○**李承哲 委員** 민간기업 또한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2000년12월30일 현재 0.95%입니다. 공공단체가 1.51%로 저조한데 민간기업이 실천하겠어요? 그래서 0.95%입니다. 1%도 안 돼요.

장애인가용부담금으로 의무고용을 피하고 있어요. 돈으로 때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勞働部長官 方鏞錫** 그렇습니다.

○**李承哲 委員**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용보조금, 그다음에 고용장려금, 고용관리비용 등과 같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를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거나 더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勞働部長官 方鏞錫** 아직 특별히 다른 방법을 연구한 것이 별로 없어서……

○**李承哲 委員** 앞으로 연구하셔야 합니다. 1년도 안 남았는데 노동행정을 연구만 하시다 끝내시겠어요? 차관님께 조언을 얻으셔서 반드시 정책을 수립하십시오.

제가 참고로 알려 드릴게요.

일부 선진국에서는 법인세, 지방세, 조세감면법에 의한 세제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나 정부조달물품 납품 등에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업에 체감적인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의무고용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조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원책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울 의향이 있으신가요?

○**勞働部長官 方鏞錫** 그것은 그냥 임시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李承哲 委員** 그러니까 재경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세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勞働部長官 方鏞錫** 예.

○**李承哲 委員** 그리고 장애인가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으로 장애인에게 창업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실적을 보면 749명에게 342억 원을 융자했고 1인당 평균 45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생계를 위한 가계자금지원 같은 정도로 자영업을 지원하는 차원의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제도를 더욱 더 확대해서 기술력이나 아이템이 뛰어난 벤처회사를 창업하고

키워 나가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창업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단순한 가계자금, 생계자금 정도의 지원이 아니고 장애인이 벤처를 설립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勞働部長官 方鏞錫**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李承哲 委員** 어쨌든 기존사업장에 대한 고용장려도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벤처창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벤처창업을 지원할 의향은 확실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나중에 본 위원이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가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고갈문제에 대해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차관님, 기금고갈문제에 대해서 지적 받으신 적 있지요?

○**勞働部次官 金松子** 예.

○**李承哲 委員** 기금의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국민의 혈세가 날아가지 않겠지요. 이 기금고갈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지적받으신 후 어떤 대책 세우신 것 있으세요?

○**勞働部次官 金松子** 담당국장이 소상하게 답변하겠습니다.

○**勞働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秀** 고용총괄심의관 鄭鍾秀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재장해자들에 대한 의무고용 인정문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산재장해자를 장애인 의무고용 속에서 제외하는 안이 현재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물론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일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제개혁심사위와 논의해서 이달 2월 말에 법 시행령 안을 통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承哲 委員**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령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십시오.

○**勞働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秀** 예, 알겠습니다.

○**李承哲 委員** 장애인기금 고갈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

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스페인같은 나라를 보니까 장애인복권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효과를 얻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복권제도가 문제점도 많고 많은 복권이 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서 가장 복권기금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권제도는 정작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이러한 컨셉서를 국민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기금이든 아니면 노동부의 특별기금 관리를 통해서 장애인복지복권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십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저희들이 아직 그것을 검토한 바는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실제로 다른 부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李承哲 委員** 기금확충 차원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촉진이라는 차원에서 복권제도에 의한 기금으로 장애인들이 벤처기업을 차릴 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 채용할 때 많은 보조기금이 나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에게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金樂冀 위원님께서 여쭙보셨는데 최근 2001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여성노동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이고 특히 기혼여성은 10명 중 8명이 비정규직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이들의 열악한 노동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여성인력의 활용에 달려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노동부에서 준 정책보고서를 보면 여성인력의 활용이 다소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성인력정책 가운데 핵심적으로 떠오르고 중점적인 내용을 보이는 것이 비정규직화 문제예요. 대부분 내용을 보면 정규직화에 포인트를 맞춘 것이 아니라 여성인력의 비정규직화에 여성인력활용정책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를 표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성부가 신설되면서까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차별적인 비정규직으로 여성을 끌어들이는 도리어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을 억제시키는 궁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여성의 비정규직 급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勞動部長官 方鏞錫** 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承哲 委員** 좋습니다.

여성국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勞動部勤勞女性政策局長 申洺** 근로여성정책국장 申洺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통계상 비정규직 속에는 여성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본적인 원인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사라든지 육아문제로 취업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취업할 때는 비정규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노동시장의 진입에서부터 실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자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성을 우대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는 남녀 할 것 없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난 11월1일부터 시행된 모성보호 3법을 여성근로자가 최소한 1인 이상 있는 사업장은 다 적용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이 우선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육아문제가 현재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사회보험제도에 좀더 흡수되어서…… 지금 의료보험도 어느 정도까지는 확대되고 있고 또 고용보험도 1인 이상까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 속에 흡수된다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직업훈련도 능력개발부문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承哲 委員** 여성이라고 해서 비정규직으로 가는 것을 가볍게 보거나 당연시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勞動部勤勞女性政策局長 申洺**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李承哲 委員** 그러면 장관님께서 책임기간 동안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막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여성국장님과 장관님의 대안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勤勞女性政策局長 申洺**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承哲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允洙** 다음 全在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在姬 委員** 方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장관님께서 과거 노동운동하실 당시에 정부가 법집행을 노사에게 형평성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그렇습니다.

○**全在姬 委員** 그 생각이 오늘 이 시점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장관님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노사관계가 상당히 안정적인 기조를 띠고 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분규 지도로 무노동무임금원칙 준수 등 자율과 책임의 성숙한 노사관행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쓰셨는데 분규건수로만 보면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관님께서 유의해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행이 확산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불법분규는 감소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331건, 2000년도에 705건, 2001년9월까지 966건입니다. 2001년 말까지도 아니고 9월까지만 해서 966건입니다. 정말로 안정되어 가는 추세라고 한다면 사용자의 불법행위인 부당노동행위가 이렇게 급증하는 추세로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처리결과도 보면 사법처리되어서 기소한 것이 99년에 122건, 2000년에 277건, 2001년9월에 268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노동부가 노사관계를 안정시킬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업무보고에 적시될 만큼 심층적으로 분석되고 그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그렇습니다.

○**全在姬 委員** 앞으로는 그 문제를 직접 챙겨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임장관님께 여러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검찰에 송치되면 바로 인신구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인신구속으로 가면 다른 여타 근로자의 고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경영에 애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거의 대부분이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취지가 전혀 살아나지 않습니다.

저도 사용자든 근로자든 구속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그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하는 조치라면 그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朴仁相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근로자 구속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단 인신구속을 하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해서 처벌받은 것을 보니까 검찰에 송치한 것이 98년에 1명, 99년에 122명 중 4명, 2000년에는 277명 중 2명, 2001년9월까지 268명 중 3명입니다.

장관님, 합당한 법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건수 자체를 가지고 합당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당노동행위라든지 불법한 행위가 있을 때 노사에 형평성 있게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全在姬 委員** 저는 단순히 건수만 가지고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기소·송치하는 건은 상당히 악질적인 건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건을 했는데 그 중에 한두 건만 인신구속을 한다면 어느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장관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법을 법대로 집행하십시오. 그 대신 사용자를 근로자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일은 장관님 재임기간 중에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노력하겠습니다.

○**全在姬 委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가 金浩鎭 장관님 계실 때부터 그 다음 劉容泰 장관님이 오셨습니까다마는 장관님 바뀌실 때마다 “장

관님, 법무부장관님을 직접 만나십시오. 만나셔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답관을 지어서 사용자들이 부당 노동행위를 하면 내 기업 자체가 쓰러지는구나 하는 관념을 갖도록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장관님께서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부탁을 각별히 드리는 이유는 장관께서 옛날에 노동조합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느꼈던 것이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른바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DJ정부가 들어서고 인권을 중시해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분 하에서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노동부가 가야할 길이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노사 간에 형평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장관하고 협의하셔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속노동자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루었기 때문에 서면질의하겠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도 중복되기 때문에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근로시간단축문제도 다루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모성보호문제에 있어서 육아휴직이 부진하다는 것도 앞서 동료위원님께서서 다루셨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성근로자가 차별받지 않으려면 현재의 노동법이 전면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기를 낳고 키우는 일은 국가적인 책무입니다. 가정적인 중대사이기도 하지만 그 국가가 존속하기 위한 중대한 기능입니다.

그 기능에 대한 부담을 사용자에게 맡겨놓으면 그런 부담을 안 지는 남성근로자와 그 부담을 안 지는 여성근로자 중에 어느 사용자라도 다 부담을 안 지는 남성근로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여성근로자의 차별입니다.

원래는 산전후휴가 같은 것은 100% 국가가 부담하고 사용자는 부담을 안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산전후휴가 때문에 기업이 겪는 불편과 직·간접 손실을 고용장려금으로 보전해 줄 때만이 그래도 고용평등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전후휴가를 전부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고 국가는 그냥 근로감독권을 갖고 처벌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부분적으로 30일 늘어난 것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는데 저는

이것이 일시에 고쳐지지는 못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같은 것을 적어도 제대로 활용하게 하려면 육아휴직 실시로 인해서 기업이 겪는 직·간접 손실을 연구용역을 주어서라도 정확하게 산출해야 됩니다. 그 산출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고용장려금으로 100% 반영해야 됩니다.

장관께서 이것을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노동部長官 方鏞錫** 여성관계이기 때문에 검토없이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

○**全在姬 委員** 고용보험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액수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현행 20만 원 주고 있지요?

○**노동部長官 方鏞錫** 예.

○**全在姬 委員**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육아휴직을 실시함으로써 해서 기업이 부담하는 직·간접 손실비용의 연구용역은 하실 수 있지요?

○**노동部長官 方鏞錫** 예.

○**全在姬 委員** 그것을 하셔서 국회에 보고하시고 또 그것을 하셔서 예산을 추계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노동部長官 方鏞錫** 예, 알겠습니다.

○**全在姬 委員**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육아휴직을 많이 쓰십시오.” 하더라도 못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 하는 현실을 직시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장관께서는 파악을 못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육아휴직비용의 일반회계 부담을 몇 % 하고 고용보험 부담을 몇 % 합니까?

○**노동部勤勞女性政策局長 申洺** 전액 고용보험입니다.

○**全在姬 委員** 육아휴직은 그렇고 산전후휴가는 얼마입니까?

○**노동部勤勞女性政策局長 申洺** 산전후휴가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금년도 예산에 150억 원만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차액부분은 고용보험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全在姬 委員** 그러면 몇 % 부담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노동部勤勞女性政策局長 申洺** 현재 저희는 50%로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마는 확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퍼센티지 문제는 좀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全在姬 委員**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원래 모성보호법을 개정할 때 이 부담 자체를 고용보험부칙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달아서 나중에 건강보험이 제자리를 잡으면 건강보험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을 주장했으나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되지 않아서 본회의에서 촉구결의안만 채택을 하고 통과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처음 시행한다고 할 때는 고용보험에서 50% 부담하고 일반회계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기획예산처에서 고용보험에서 많이 부담하고 일반회계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적게 부담하는 쪽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를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예결위에 올렸으나 예결위의 사정으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장관께 드리느냐 하면 장관께서 아까 육아휴직에 따른 장려금을 예산사정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바로 잡으시면 장려금을 적정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제대로 부담하도록 고쳐놓지 않으면 다른 여성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애에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03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가서는 장관이 직접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나셔서 적어도 당초에 약속한 대로 일반회계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직접 뛰어주십시오. 뛰어주시겠습니까?

- 노동部長官 方鏞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全在姬 委員** 나머지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允洙** 全在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위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시30분에 속개해서 보충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委員長 李允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文洙 委員** 오전에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允洙** 지금 방망이를 쳤으니까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洪信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洪信 委員** 金洪信입니다.

모성보호법 적용과 관련해서 저도 준비를 해 왔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를 질의하셨으니까 제안을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도 여성노동자 출산건수와 관련해서 여러 통계치가 제시되었는데 결국 통계청의 연령대별 출산율에 여성근로자 연령별 분포를 곱해서 1년 출산건수를 계산했는데 이는 직장여성과 전업주부 간의 출산율 차이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분만급여 신청건수를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여성근로자는 직장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하게 되면 그 출산에 대한 진료비, 즉 분만급여 청구를 하게 되므로 여성근로자 출산건수를 추산하는 데 틀림없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 주면 통계치가 정확하거든요. 장관께서 인식을 하신다면 이것을 한번 모색하시겠습니까?

- 노동部長官 方鏞錫** 모색하겠습니다.

- 金洪信 委員**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관한 것인데 여성의 모성보호와 노동력 활용 측면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보육정책인데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근자에 강하게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 노동部長官 方鏞錫** 예.

- 金洪信 委員** 2001년 발표된 메킨지의 우먼코리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면 현재 54% 수준인 대졸여성 취업률을 80에서 90%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제기하고 한국 여성의 취업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는 보육문제다 이렇게 봤습니다.

실제로 장애요인이라는 것은 전문가들 누구나 지적하는 것인데 최근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에서 조사한 것을 봐도 여성근로자 총 487명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보육시설은 무엇이냐는 질문의 1순위로 직장보육시설을 꼽았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01년6월 기준으로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설치 의무사업장 총 230개 중에 20.9%인 48개만 설치했고 보육수당은 25개 사업장에서 지급하고 있었는데 결국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68.2%가 법 위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이지만 퍼센티지가 소수점에서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마는 사실 장관께서 봐도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것 맞지요? 그렇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金洪信 委員**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자료를 보니까 매 국감 때마다 제기되어 왔던데 99년에는 설치율이 20.5%, 2000년에는 설치율이 23.9%, 2001년에는 20.9%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문제점이라고 인식을 하십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문제점이라고 인식하지요. 다만 IMF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향추세가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제가 작년 2월과 6월에 작성된 노동부 업무보고 자료와 국정감사 자료 또 오늘 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보았는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대책으로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등으로 육아부담 완화라는 문구를 반복해서 관성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 1735개인데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230개에 불과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의 경우에도 전체직원 1200명 중 여성직원이 100명 미만이었어서 실제로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분들을 권역별로 시설을 만들어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직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여성근로자가 그 직장에 몇 명 이상 있느냐 하는 문제를 보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좋습니다.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직장보육시설 확보 연차년 사업계획 설정 또 별칙시설,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운영평가 등 육아 문제 지원실적평가를 통해서 우수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정책 이런 것들까

지를 포함한 장단기적인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에서 연구·조사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및 여성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서면으로 드리고 직재법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에 성별분류코드 하나만 더 삽입한다면 의무고용 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별코드를 하나만 설치하면 분류·분석과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차관께서 여성이시니까…… 어떻습니까?

○**勞動部次官 金松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洪信 委員** 제안하는 것이니까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저소득층 자활대책 문제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2001년12월31일 기준으로 노동부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노동부의 전산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만 41명 중 4366명이 부적격자, 소재불명자가 892명, 전출자가 163명, 기타 사유로 자활지원이 종료된 건수가 1719건이나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자료를 죽 검토해 보면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연계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제 장관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보건복지부와 전산시스템만이라도 정리를 하고 상호교류를 한다면 정부부처로서 충분히 이런 문제는 지적받지 않고 제대로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장관께서는 이 문제의 판단을 어떻게 하시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부처 간의 협의를 할 것인지 그 의지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같은 부처 안에서, 같은 정부 안에서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우선 자활 문제에 대해서 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사실 예산은 있는데 자활신청하는 부분을 보건복지부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자활신청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

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협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니까 지자체의 사회복지전문요원하고 고용안정센터 간의 사전 조율작업을 강화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勞働部長官 方鏞錫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용안정센터의 성과를 양적으로 평가하던 부분을 앞으로는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아가는 사업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允洙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朴仁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朴仁相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그러면 金晟祚 위원 질의하십니까?
○金晟祚 委員 아까 국장님께서 1/4분기 공공근로사업장 등에 올해는 중점적으로 돈을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준다고 그랬는데……

○勞働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좀 정리했습니다.
○金晟祚 委員 이것 일찍 갖다 주셔도 되잖아요. 꼭 제가 물을 때 갖다 주어야 됩니까?

○勞働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洙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允洙 속기록에 답변자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꼭 직책하고 이름을 대라는데……

○勞働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洙 고용총괄심의관 鄭鍾洙입니다.
○委員長 李允洙 속기록에 답변자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꼭 직책하고 이름을 대라는데……

○勞働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洙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允洙 속기록에 답변자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꼭 직책하고 이름을 대라는데……

○勞働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洙 고용총괄심의관 鄭鍾洙입니다.
○委員長 李允洙 속기록에 답변자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꼭 직책하고 이름을 대라는데……

○勞働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洙 고용총괄심의관 鄭鍾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은 9207억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는 약 17% 축소되어서 643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 1/4분기에는 2629억 원 약 29%를 배정했는데 금년에는 2302억 원으로 총액은 적습니다만 약 36%, 작년보다 7%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金晟祚 委員 그것이 1/4분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勞働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洙 작년보다는 1/4분기 중에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金晟祚 委員 작년 예산이 당초 예산입니까?

○勞働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洙 이것은 집행실적입니다.

○金晟祚 委員 그러니까 올해도 만약에 추경을 하면……

○勞働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洙 이것은 작년에 추경이 없었고 9633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은 9207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金晟祚 委員 제가 이렇게 이 문제를 따지는 이유는 1/4분기에 작년 대비 돈을 7% 더 했더니 덜 했더니 이런 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작년 것을 보고 그대로 배긴 흔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느낌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큰 제목 보십시오. ‘내실 있는 실업대책 추진’, 이것하고 1/4분기에 돈 많이 쓰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勞働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洙 그 부분은 물론 사업 하나하나 조금 다른 것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제목을 그렇게 뽑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과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金晟祚 委員 1/4분기에 돈을 집중적으로 주겠다는 것은 내실 없는 실업대책 아닙니까?

○勞働部雇傭總括審議官 鄭鍾洙 그런데 실업예산을 가능하면 금년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金晟祚 委員 아니, 국장님 그것이 어떻게 내실 있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실업자를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것이 내실 있는 실업대책의 일환이지 1/4분기에 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이것을 어떻게 내실 있는 실업대책 추진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까?

그래 놓고 또 작은 제목은 뭐라고 써 냈는지 아세요? 물량위주의 실업대책 사업을 줄여나가고 실업대책의 실효성 제고와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소제목에다가 써 놓았습니다. 이것 작년 것 보고 그대로 쓴 것 아니에요? 생각해 보고 쓴 것입니까?

장관님, 오늘 오셔서 이 보고서 국회에 보고할 것인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勞働部長官 方鏞錫 여러 번 읽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읽어본다고 파악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행정부에서의 사업이라는 것이 늘 전년도 것을 참고해서 사업계획을 쓰기 때문에 배겼다고 보여지는 하지만 실현성 없는 것을……

○金晟祚 委員 배겼다고 보여지면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같은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 강화’ 이렇게 써 왔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취업 취약계층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장기실업자, 고령자 이렇게 하면 취약계층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계층은 어느 계층입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화하시겠다 그런데 그러면 취약계층이 아닌 계층 중 어떤 계층은 우리나라에서 취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그렇지는 않지요. 전체적으로는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요.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취업하기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령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더 많고 그렇습니다.

○**金晟祚 委員** 예산을 잘 때도 가능한 한 제로베이스에서 짜면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정책 또 2002년도 새로운 사업계획 이런 것을 작성할 때도 작년 것을 무시하고, 또 장관님이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새로 와서 국회에서 첫 번째 업무보고할 때는 늘 쓰던 용어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취약계층 아닌 계층이 있는데 어떻게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계속 씁니까? 많이 고민한 사업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允洙** 金晟祚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질의를 못 하신 金文洙 위원, 질의시간 15분 드리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우선 方鏞錫 장관님께서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方鏞錫 장관님께서 현장에서의 많은 노동경험이 계시고 또 노조 지도자로서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노사관계가 훨씬 더 안정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경륜과 능력이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보시던 여러 가지 안타까운 노동행정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고쳐 나가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는 탁월한 의정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뜻하는 바가 무

엇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행정과 잘 결합되어서 우리 노동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또 많은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훌륭한 기여를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장관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또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에 장관을 맡으셨기 때문에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마는 우선 실업문제에 대해서 보자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많이 이야기하던 부분입니다마는 첫 번째로 실업문제는 실업 현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고 실업통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늘 지적했는데 아마 장관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시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金文洙 위원님께서 아주 전문가시라고 생각합니다.

○**金文洙 委員**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공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선 실업통계 자체가 통계청에 의해서 관장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통계 부분에서 조금 현실과 잘 안 맞는 다든지 뒤떨어진다든지,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실업통계의 작성방식,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ILO 방식하고 OECD 방식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미국에서 쓰고 있는 다양한 실업기간에 따른 통계라든지 반실업상태, 잠재실업자들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밝힐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마 연구도 많이 되었고 제가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통계청장이 여기 와서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통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洙 위원장, 金樂冀 간사와 사회교대)

○**勞動部長官 方鏞錫** 사실 아시는 바이겠지만 통계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부처가 따르기 때문에 노동부가 별도의 통계를 내서 그것을 공식발표하고 그것에 의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총리실 산하에 있는 노동연구원을 통해서 주기별로 통계를 내서 그것에 대해 일정 정도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金文洙 委員** 통계청하고 한번 협의하시고 또 노

동연구원에서 그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노동부에서도 일부 사업체 통계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이번 기회에 제도정비 차원에서, 제도발전 차원에서 장관님께서 발전시키시면 노동행정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기여가 되지 않겠나, 또 통계 측면에서도 다들 알 만한 분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실업통계방식을 다양화하자는 것하고, 두 번째로 지자체별 통계가 사실 불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늘 주장하던 바인데 광역단체의 실업통계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직접적 방식이 아니라 전국에서 하는 것을 지역별로 한 것인데 어떤 특정지역, 특히 실업이 심하다든지 실업변동이 많다든지 실업에 특별히 고찰할 만한 현상이 나타날 때는 광역단체에 대해서도 별도로 노동부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해서 실업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노동행정이 지방자치 또는 행사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초행정단위와 협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요즘에 와서는 예를 들면 공공근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동별 또는 시·군·구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해서 노동부가 직접적으로 결합이 안 되고 노동행정단위와 일반 자치행정단위가 전혀 맞지 않고 따로 놀기 때문에 낭비적 요소도 많고 적합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별, 시·군·구별 실업통계를 산출·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 이유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그것을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働部長官 方鏞錫** 실장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실장 답변은 제가 늘 듣는데 “돈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장관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가능하다면 그것은…… 왜냐하면 노동행정이 자치행정과 잘 결합되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勞働部長官 方鏞錫** 金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공감하는 바인데 문제는 실행에 있어서 저희들의 지방조직이 근로감독행정이라는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과연 통계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뒷

받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통계청과 협조해서 하는데, 저는 근로감독업무를 위주로 하는 우리 노동행정도 더 진일보해서 그야말로 고용업무를 훨씬 더 중시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 점도 검토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실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노동부에서도 청소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14쪽 밑에 보시면 마지막 네모에 ‘교육부문과 산업현장의 연계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만 이렇게 써 놓았지 내용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마는 이 핵심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낼 것이냐, 즉 교육인적자원부하교의 관련 속에서 청년 실업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실제로 풀기 어렵다는 인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마는 여기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은 너무 피상적입니다. 물론 그 뒤에 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학과 조정 또는 각급 학교에 대한 취업서비스 지원 강화, 또 직업현장에서 어느 정도 적합한 교육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과 노동부의 역할이 연계된 작업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도 좀더 연구하셔서 가지고……

○**勞働部長官 方鏞錫** 지금 저희 부가 추진하는 현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까지 마련된 것을 서면으로 제시하시는 것보다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산업현장과 연계 강화’라고 써 놓으신 것 중에 소위 말하면 경제정책 또는 산업정책과의 연관성,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결국은 현재 우리 당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향후 20년간 연 6%의 성장, 그러니까 평균 잠재성장 역량에 비해서 약 1% 이상 더 성장하는 특별한 성장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고용을 흡수할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총리라든지 산업자원부라든지 이런 경제부처와 노동부 사이의 경제정책, 산업정책 특히 성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적 협의와 노력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가 상당한 의견을 반영하고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력해 주시고 만약 마련된 것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현안으로서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라는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중에서 연수지원제 3만 5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만 5000명 중에 1월 말 현재까지 신청자가 1170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라는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과연 이 정책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홍보부족도 있겠지만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방향은, 연수지원제가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수지원 3만 5000명 중에 공공부문을 약 2만 2000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느 부분에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勞動部長官 方鏞錫** 금년이 시작되는 2월 초니까 지금 완벽하게 추진해서 커다란 실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방안도 마련하고 추진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상반기까지 지금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내용을 채워야지요.

○**金文洙 委員** 내용을 채우는데 내용과 방향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노동부 생각에는 그 정책에 문제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다는 뜻인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그런데 문제는 계획을 세워 놓고 시작도 안 해 보고 계획을 취소하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난 해 했던 것을 참작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면서 내용을 채워 나가려고 합니다.

○**金文洙 委員** 아직은 다른 개선방안이 없다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모색하고 있는 것이지요.

○**金文洙 委員** 모색보다도……

우선 한 달밖에 안 해보았으니까 몇 달 더 해본 다음에 하겠다고 이러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노동부의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로인데…… 겨울이 한참 취업시즌이거든요. 졸업하고 바로 직장을 구하는 시즌에 이것밖에 안 된다면, 그렇다고 여름이라고 해서 새로 졸업생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1월의 실적이 ‘한 달밖에 안 해봤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때가 취업성수기인데 안 된다고 할 때는 이 정책 자체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획기적인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勞動部長官 方鏞錫** 사실 모든 정책이 연초에는 연휴 등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의 정책집행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하기가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金文洙 委員**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월 한 달은 대졸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나 전문대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라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대의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제가 볼 때 단순히 홍보부족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공공부문을 약 2만여 명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부문이라 하면 대체로 어느 부문을 말하고 있습니까?

실무 책임자가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고용정책실장 金容達입니다.

작년 연말에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각 부처 간에 누차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공공기업들이 전부 신청을 받아서 2만 2000명을 공공부문에서 계획했던 것입니다.

○**金文洙 委員** 공공부문이라면 주로 어떤 부문입니까?

그러면 어느 국가기관 어디에서 2만 2000명을 받기로 되어 있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예,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요지는 실업정책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여야를 불문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실효가 적지 않느냐, 실업당사자들이나 일반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해결되고 있지 않은 난제 중의 난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동부 자체뿐만 아니라 교육인적

자원부 또는 경제부처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그 대책이 효과적으로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樂冀 金文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承哲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哲 委員 존경하는 金文洙 위원님께서 아까 청년실업의 산학 연계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여쭙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1년12월 말 현재 서울의 실업자는 20만 3000명, 경인지역 실업자는 18만 4000명으로 전체 실업자 76만 2000명의 50.8%가 서울과 경인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실업은 전국적으로 38만 3000명에 8.1%의 실업률을 보임으로써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이 달에 졸업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그 수가 아주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시채용과 경력직 위주의 채용으로 변화되고 있는 고용환경은 청소년의 진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정하시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李承哲 委員 이러한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물겠습니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훈련기관의 배치현황을 보면 직업전문학교가 전국에 21개인데 서울과 경인지역에 2개, 기능대학은 전국에 22개인데 서울과 경인지역에는 5개가 설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졸업생 중 많은 수의 미취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취업기회가 높은 수도권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현재의 직업전문학교나 기능대학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기초기능인력의 수요에 대처하고 다양한 계층의 훈련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확대가 요청되는데 이들 교육기관의 확대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方鏞錫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신문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부실한 직업훈련기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직업훈련기관 같은 경우를 좀더 내실 있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李承哲 委員 방향이 조금 다른데, 정부는 지난번 취업능력의 제고를 위한 공공훈련과정을 지식기반산업 직종으로 개편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섬유산업의 메카인 대구에 섬유패션기능대 그리고 항공산업도시 사천에 항공기능대를 개교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면서 수도권 청소년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학 연계를 위해서, 특히 수도권 지역의 청소년들은 디지털 마인드와 디지털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등 각종 디지털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디지털 산업을 위해서 디지털 산업단지 와 키콕스(KICOX) 본부가 있는 서울 구로공단에 디지털기능대를 설립하는 것도 좋은 산학 연계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직업교육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方鏞錫 하여간 구로공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분야에서 변하여 디지털 산업단지로 변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기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承哲 委員 기존의 직업교육이라든가 기능대의 교육과정이 현재 청소년들의 디지털 마인드나 디지털 기능과 반대되는, 단순기능이라든가 산업기능을 양성하는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청소년들의 기능도 변했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도 바뀌었는데 교육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인드를 가진 디지털 산업전사들을 양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산업단지가 있는 쪽에 기능대학을 추가하면 산학연계에 의하여 상당히 빠른 기술 습득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시겠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지역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承哲 委員 그다음에 제가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전에 장관님의 견해를 여쭙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근로자에 대한 법적 개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개념을 보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레미콘기사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일부 특수 직종의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나 법원 판례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는 인정받았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정의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혼란이 있는 채로 양 법상에 따로따로 정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몇 년 전부터 그런 의견을 제기한 위원님들도 계셨는데 현재 상태로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哲 委員** 일례를 들겠습니다.

최근 많은 직업군 중에 TM이라고 있습니다. 텔레마케터입니다. 전화로 홍보하고 영업하는 TM이라는 직업이 상당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일인데 SK생명의 TM에 대해서…… 아시나요?

담당국장이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SK생명의 TM이 노동조합 설립신청을 했습니다. 서대문에 피어리스빌딩이 있는데, 노동조합으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설립신청서를 계속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은 회사의 회유작전에 의해 무릎을 꿇고 TM노조가 탄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한 방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독하에 일사불란하게 쉬는 시간도 없이 근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조건이라든지 대우들이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설립신청이 반려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 규정상 근로자의 정의개념이 불일치한 데서 나오는 것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M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레미

콘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의 적법성 문제와 TM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소상하게 아는 바가 없어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承哲 委員** 예, 좋습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노정국장 安鍾根입니다.

TM 노동조합 설립신청이 작년에 영등포구청에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질의를 요청해서 회신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 제689조의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 위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보험모집활동을 하고 필요 시에 방문판매도 가능하다는 점, 그다음에 월급이 없이 활동수당만으로 그 실적에 따라서……

○**李承哲 委員** 현장에 가보셨어요?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현장에는 가지 않고……

○**李承哲 委員** 저는 현장에서 이틀동안 있어 보았는데……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저희들이 근로자 쪽과 사용자 쪽의 모든 자료들을 수집해서 분석했습니다.

○**李承哲 委員** 저는 현장에 가서 노동현장 실태를 다 보았어요. 그런데 일반 근로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고용부담을 줄이고 여러 가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상한 민법고용계약을 만들고 자유소속자로 만들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 현실을 알아야지요. 사실상의 고용관계라든지 근로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서류상 근로관계 고용계약이 뭐가 중요합니까?

전국에 TM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진출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들이 굉장히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고 정착성 없이 유행화되어서 떠돌고 있습니다. TM의 법적 지위, 노동자성에 대해서도 노동부에서 빨리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일단 노동 종속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열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어느 부분이 더 강하나…… 근로자성이 강하다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못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李承哲 委員** 가서 파악하셨냐구요?

○**労働部勞政局長 安鍾根** 그때 면담도 하고……

○**李承哲 委員** 저는 직접 가서 모든 근로조건을 체크해 봤어요. 그런데 노동자성이 더 많아요. 더 많은 것이 아니고 노동자라고 보면 됩니다. 단지 사용자들이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약만 요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TM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労働部勞政局長 安鍾根**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承哲 委員** 그리고 유해물질인 DMF라고, 디메틸 포름 아미드인데 굉장히 유해해서 전 산업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가 산하단체의 노동조합 노사관계 부분에 있어서 서울마사회 경마장 노사분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중단까지 된 사태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노정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労働部勞政局長 安鍾根**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承哲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樂冀** 李承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全在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在姬 委員** 제가 오전에 모성보호 관련질의를 하다가 중단했는데 사립학교, 병원 직원들이 지금 개정된 근로기준법상의 30일분 혜택을 못 받아서 전국보건의료노조에서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을 장관님께서도 보고 받으셨지요?

○**労働部長官 方鏞錫** 예.

○**全在姬 委員** 그리고 지금 고용보험법에서 이분들을 법 적용에서 제외한 것은 물론 법 제정 당시에 관련부처와 협의가 안 된 이유도 있지만 그때 협의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사람만큼은 보호가 될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노동부의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労働部長官 方鏞錫** 예.

○**全在姬 委員**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労働部長官 方鏞錫** 자료는 있습니다라는 여기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논쟁이 아주 많기 때문에 여성국장께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全在姬 委員** 아닙니다. 제가 법률적인 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면 적어도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고용보험법에 적용되는 사람만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계속 적용제외를 해도 무방하겠지만 사각지대에 방치된다고 한다면 다시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노동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개별로 만나서 사용주로 하여금 직접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하게 하거나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노동부에도 물어보고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에 다 물어봐도 서로가 미루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적어도 장관님 취임 초에 바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労働部長官 方鏞錫** 꼭 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사실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라고 하는 법을 고치기만 하면 제일 쉬운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부에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노동부에서도 그렇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좀더 진지하게 협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全在姬 委員** 저는 노동부장관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적어도 고용보험법에서 적용되는 수준의 보호를 해 주지 못한다면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労働部長官 方鏞錫** 결국은 고용보험법도 개정해야만 가능합니다.

○**全在姬 委員**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労働部長官 方鏞錫** 그렇습니다. 사각지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全在姬 委員**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고용보험법 개정작업으로 들어가서라도 사용자로 하여금 그런 혜택을 주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처협의 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얼버무리지 마시고 적어도 4월 임시국회 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労働部長官 方鏞錫** 노력하겠습니다.

○**全在姬 委員** 그다음에 장관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행정의 맥을 짚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도를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제도를 고치지 않더라도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현행법만 충실하게 집행을 하면 근로자의 권익이 상당히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관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그렇습니다.

○**全在姬 委員** 예컨대 오전에 존경하는 金樂冀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비정규직문제도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는 문제, 불법 파견업체라든지 불법용역업체라든지 이런 불법의 문제만 단속하더라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장관들께서는 대개 이 불법문제가 경찰서의 단속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부는 현황도 파악할 수 없다고 속수무책으로 방치해서 이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관을 옮겨 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무조정실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는 것은 부처 간의 업무조정총괄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해서 불법만이라도 확실하게 단속해 주실 것을 장관님에게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보면 “equal work equal payment” 원칙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全在姬 委員** 그러나 노동부가 이 조항을 한번도 제대로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집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시범적인 사례를 통해서라도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적용하게끔 하면서 비정규직을 쓰는 사람들이 임금이 싸기 때문에 쓰는 문제는 고쳐 나가면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굳이 부처협의를 거치고 제도개선을 하지 않더라도 노동부가 총력을 기울이면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전에 장관께서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노동부 내에 작업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신중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은 신중한 연구검토를 할 필요없이 장관이 바로 현행법을 가지고 노동부직원과 다른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정부가 의지를 보이면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앞으로 현행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고치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全在姬 委員** 또 크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 직업병문제하고 산업재해문제입니다. 장관께서 업무 보고를 받으셔서 알겠지만 산업재해 재해자 수가 99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까지 99년도에 5만 5405명, 2000년도에 6만 8976명, 2001년도에 8만 273명이고 사망자 수는 99년도에 2291명, 2000년도에 2528명, 2001년도에 2744명, 경제적 손실액도 따라서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망만인율은 전체적인 적용근로자 수가 많다 보니까 다소 하향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는 99년도에 2732명, 2000년도에 3414명, 2001년에 5555명이고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도 99년에 835명, 2000년에 955명, 2001년에 1180명, 만인율도 99년도에는 3.67명이던 것이 2001년에는 5.25명으로 해서 질병의 경우에는 모두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와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거나 노동현장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장애자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생존권의 위협이기 때문에 장관이 어떤 업무보다도 이 업무에 역점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장관님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통계를 일부러 읽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산업안전공단 국정감사때 제시했던 문제인데 장관께서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직업병감시체계를 좀더 광범위하게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업병감시체계는 직업병발생 또는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수집·분석·평가하여 직업병의 발생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직업병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작된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도 천식이라든지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여천, 구미 등 일부지역에서 감시체계를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고 광범위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드린 대로 직업병이 전체적인 숫자뿐 아니라 만인율까지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고 신종 유해물질이 날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장관이 확실한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대

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이 분야에 대한 별도보고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서면보고해 주실 수 있지요?

○**勞働部長官 方鏞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樂翼 간사, 李允洙 위원장과 사회교대)

○**全在姬 委員** 다음에 노동부가 대응하는 데 굉장히 늦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李承哲 위원님께서 디메틸포름알데히드 이른바 DMF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에 의해 93년에 사망자가 처음 발생했고 97년에도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노동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2001년에 '사고발생'하고 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벤젠의 경우에도 90년과 92년에 2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노동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2001년입니다. 다음에 석면으로 인한 악성 종피증으로 직업병이 발생한 것은 93년이요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석면노출 기준을 강화한 것은 2001년도입니다.

장관님, 너무 늦지요?

○**勞働部長官 方鏞錫** 예.

○**全在姬 委員** 이렇게 늦으면 안 되겠지요?

○**勞働部長官 方鏞錫** 예.

○**全在姬 委員**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장관님께서 속속들이 파악하셔서 제때제때 대응하는 노동부가 되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勞働部長官 方鏞錫** 예, 노력하겠습니다.

○**全在姬 委員** 특히 디메틸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97년도에 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에서 2001년에 다시 발생했고 그것도 우리나라 근로자가 아닌 산업연수생이 사고를 당했다는 점에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노동부에……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면 조달청에서 입찰 받을 때 불이익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청업체들이 불이익을 안 받으려고 하청업체에서 재해가 나면 무조건 숨깁니다. 그래서 하청업체의 산재은폐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노동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착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勞働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산업안전국장 宋智泰입니다.

우선 지난번 산재예방기금이 통합되면서 제 기능을 못할 뻔했었는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全在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정감사 때 건설업체도 거론했지만 조선업체도 문제가 많고 저희들도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실체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은 사업자하고 근로자하고의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밝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전국에 있는 46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조사해 보면 쉽게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형식적이지 위원님에게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안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서 올해 산재예방기금에 포함시켜서 민간인으로부터 설문조사도 받고 실제로 정부가 아닌 제3의 회사가 용역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해서 용역사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全在姬 委員**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법을 이상적으로 만들더라도 현실적합성이 없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안전까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산재은폐의 유인책이 되고 막을 길이 없다면 다른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같이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노동부에 요청한 직업병 중 기타로 분류된 직업병과 업무상 질병사망자 중 기타로 분류된 직업병의 구체적인 병명을 보면 2001년의 경우 총 65명의 직업병자 중에서 피부염이 26건, 85명의 업무상 질병사망자 중에서 간암이 13건, 간경화가 9건 등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발병경로, 직업병 판정경과의 정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働部長官 方鏞錫** 예.

○**全在姬 委員** 다음에 아까 실업문제를 얘기했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동부가 실업대책을 세울 때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勞働部長官 方鏞錫** ……

○**全在姬 委員** 됐습니다. 국장도 모를 정도면 안

한다고 봐야지요. 국장이 몰라서 뒤를 돌아보고 물을 정도면 보조지표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것입니다.

노동부가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 미국처럼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보조지표를 쓰고 있는데 꼭 미국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보조지표가 나오고 있는 만큼 보조지표를 포함해서 실업대책을 세워야 실업대책이 제대로 세워진다고 생각을 해서 장관께 향후 실업대책 수립시에 보조지표를 활용해 줄 것을 먼저 건의하고 두 번째 문제는 보조지표를 활용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직단념자라고 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들어간 사람 중에 지난 1년 동안 구직활동을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은 구직단념자란 개념으로 살아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예 구직활동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은 실제에 있어서는 실망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서 실제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원에서는 실제실업률이 3%라면 체감실업률은 5.9%에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일일이 다 소개를 하지 않겠지만 향후 노동부가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아울러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한 실망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됨으로 인한 실제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유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은 취직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도저히 가망이 없어 포기했기 때문에 그냥 두면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떨어져서 실제에 있어서도 국가에 굉장한 문제로 등장을 하는 계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의하지 않는다면 노동부가 한 번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알겠습니다.

○**全在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允洙 金樂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樂冀 委員**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金文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그동안 인턴제가 비판을 받아 오니까 보완을 해서 청소년연수지원제도로 이원화시킨 것이지요, 그렇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金樂冀 委員** 그런데 이 제도가 金文洙 위원께서

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피크인데도 실적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시행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시겠다고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무엇이나 하면 졸업예정자들에게는 이 연수제도가 적합할지 모르지만 졸업생들은 하루빨리 안정된 직장을 갖고자 하기 때문에 연수생 지원제도가 별로 실효를 거둘 수 없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졸업한 사람이 임금이 아닌 교통비, 중식비 등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연수수당 30만 원을 받아가면서 다른 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 인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과연 선택 여기에 참여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실적이 낮은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을 보완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해 보신 것은 없지요?

고용정책실장이 답변해 보세요.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는 연수최저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고 또 1일 연수기간을 4시간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지방의 실시센터에서 건의 들어온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정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樂冀 委員** 기본적으로 졸업생들한테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이 보완되어야지 목표만 설정해 놓고 실적은 전혀 안 오르면 되겠습니까? 실효가 없지요.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실업률이 평균 3.2%,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소년실업률이 7.1% 이상 되지요?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예, 그렇습니다.

○**金樂冀 委員** 재학생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졸업생에게 이 제도를 시행해도 이렇게 실적이 안 올라가면 청소년실업은 계속 늘 수밖에 없고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도 하나만 신설했을 뿐이지 과연 실효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하라는지 철회하라는지 그런 뜻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빨리 검토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그렇습니다. 위원님

들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우선 안정된 직장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수보다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턴제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새로 생긴 연수지원제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그리고 두 번째, 연수생들은 글자 그대로 임금이 아닌 소위 실비변상적인 연수수당을 30만 원 받는데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예, 그렇습니다.

○**金樂冀 委員** 근로자로 인정을 안 했을 경우 연수생들의 권리보호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연수협약서라는 것이 있는데 연수협약서 외의 취업규칙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만약 연수기관에서 연수생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연수목적 외의 대체근로 등 불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연장근로같은 것은 아직 우리가 예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사고가 생길 경우를 예상해서 민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樂冀 委員** 단순히 연장근로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연수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업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치더라도 이 사람들도 근로를 하므로 권리가 보호되어야지 방치되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불법이 안 생긴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내의 해외불법취업자와 스타일이 똑같다는 것이네요.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다시 보완해서 대책을 논하든지, 연장근로나 대체근로 이런 불법사실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 연수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강제근로나 연장근로 등 실제로 강제근로를 시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그런데 각 사업장의 지방사무소, 지방청 인력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지도감독이 가능합니까?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불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는 한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네요.

그렇다고 노동부 직원들이 감시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니면서 지도감독

한다는 것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金樂冀 委員**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게까지 손이 못 갑니다’ 그런 변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예, 그런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검토해서 연수생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예.

○**金樂冀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允洙** 金樂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鄭宇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宇澤 委員** 方鏞錫 장관 취임을 축하합니다.

오늘 보고자료에 청소년실업대책문제가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청소년실업대책을 몇 번 했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두 번 했습니다.

○**鄭宇澤 委員** 언제 언제 두 번 했지요?

○**勞動部長官 方鏞錫** 2월, 12월……

○**鄭宇澤 委員** 12월에 한 것이 여기에 써 있는 청소년실업종합대책으로 나온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方鏞錫** 예.

○**鄭宇澤 委員** 작년 1월인가 2월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떤 문제점이 라든지 보완이 필요해서 작년 12월에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까?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고용정책실장 金容達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실업대책으로 IMF 이후의 대량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물량위주의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도덕적 해이문제, 그리고 청년인턴제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에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한다는 사중순실효과 등의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양적인 문제를 질적인 문제로 변화시키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鄭宇澤 委員**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만약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기 어려우면 2월에 이러한 대책을 세운 후 12월에 추가로 무엇을 보완했다든지 또는 실제 운영해 보고 이런 프로그램은 바꿨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알겠습니다.

○**鄭宇澤 委員** 이왕 나오셨으니까 묻겠는데 5552억 원이 금년에 집행되는 예산입니까?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그것은 작년 12월부터 금년까지의 집행계획입니다.

○**鄭宇澤 委員**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는데 29세까지 하는 것, 아까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온 것까지 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 생각에 이것은 OECD 기준하고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노동부에서 검토해 보셔서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의문을 가져요. 예컨대 과연 15세부터 20세까지의 실업률과 20세부터 25세의 실업률, 25세부터 29세의 실업률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실 수 있어요? OECD보다 우리가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나이를 구분한다면 어느 쪽의 실업률이 제일 높습니까? 15세부터 20세, 20세부터 25세, 25세부터 29세 중 어느 쪽의 실업률이 제일 높습니까?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20세에서 29세까지의 실업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鄭宇澤 委員** 20세에서 25세가 제일 높겠지요?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예.

○**鄭宇澤 委員** 그래서 제 생각에는 25세까지 해서 OECD 기준하고 맞추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宇澤 委員**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대졸자가 1년에 얼마나 나오니까?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전문대까지 합쳐서 47만 2000명입니다.

○**鄭宇澤 委員** 1년에 나오는 배출자가 그렇지요?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예.

○**鄭宇澤 委員** 작년 말 기준으로 취업률 통계가 나왔습니까?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취업률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확실히는 못 하겠습니다.

○**鄭宇澤 委員** 대충 몇 % 되지요?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68%……

○**鄭宇澤 委員** 제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공공근로사업, 또 인력부족직종훈련, 취업유망분야훈련,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 4년제 대졸자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에 정말로 옵니까?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지금……

○**鄭宇澤 委員**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청소년실업종합대책으로 나온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실제 운영해 보니까 이 프로그램들은 4년제 대졸자들이 정말 선호하고 많이 온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4년제 졸업한 사람들은 이런 데를 선호하지 않을 것 같아요.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지원인턴제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대학졸업자이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지적도를 전산에 입력시키는 사업들은 전부 대학졸업생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鄭宇澤 委員** 작년에 인턴제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요?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작년에 3만 700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鄭宇澤 委員** 제 생각에는 지금 4년제 졸업자에 대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대통령께서 연초에 연두기자회견 하시기 전 경제간담회 할 때 정부가 실업률 3%에 너무 만족하는 것이 아니냐,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노력을 더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 노동부 쪽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여기 보니까 T/F팀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각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잘 알겠습니다.

○**鄭宇澤 委員**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구에서도 피부로 느끼는 일이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드렸습니다.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알겠습니다.

○**鄭宇澤 委員** 들어가십시오.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도 수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다 진실은 아니지만 차관 회의라든지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劉容泰 장관이 계실 때 국감 때 이야기한 것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때도 제가 劉 장관께 진위를 여쭙보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노동부의 입장을 잘 정립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발생한 독성간염 발생과 관련해서 몇 말씀 문겠습니다.

독성간염자가 국내에 최초 발생했지요? 보고받으셨습니까?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산업안전국장 宋智泰입니다.

아까 全在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3년도에 독성간염 발생에 의해 1명 사망했고 97년에 1명 발생했고 그 이후 이번에 대우인터내셔널에서 세 번째 발생했고 폐기물……

○**鄭宇澤 委員**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대우인터내셔널이라는 양산에 있는 공장입니다.

○**鄭宇澤 委員**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원장과 청우개발 쪽에 대한 것인데 지도감독한 적이 있나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예, 지도감독하였습니다.

○**鄭宇澤 委員** 어떻게 했어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사건이 나고 나서 역학조사도 하고 지도감독도 했습니다.

○**鄭宇澤 委員**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는 한 바가 없었고……

○**鄭宇澤 委員** 사업주가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결과 이상 없다는 것으로 보고했다는 것만 있고 지도감독한 적은 없다고 나와 있는 데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사건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조사도 했고 점검도 했고 사법처리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 문제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鄭宇澤 委員** 그러니까 노동부의 지도감독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노출기준 초과 등의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그렇습니다. 예방차원에서는 저희들 감독인력만 충분하다면 아무리……

○**鄭宇澤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부가 관리해야 될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몇 개

나 됩니까?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니깐 137개로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鄭宇澤 委員** 제 자료에 130여 개에 4100명 정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대강 맞습니다.

○**鄭宇澤 委員** 그런데 그동안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얼마나 했어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저희들이 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접근해 나갈 때는 남을 취급해 가지고 흠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분진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이고 지정폐기물 처리같은 경우에는 현재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등록을 받고 관리를 하고……

○**鄭宇澤 委員** 아니,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해야 할 산업폐기물 수가 130개라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7개 업체에 열 번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맞습니다. 99년 이후에 열 번 실시했습니다.

○**鄭宇澤 委員** 그렇다면 130개나 되는데 겨우 7개 한 것 아니에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통상 DMF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분기별로 1년에 두 번씩 작업환경측정을 하는데 작업환경측정에서 DMF 10ppm 이상이 될 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출기준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상반기, 하반기 각 9개, 그러니까 합해서 18개 업체가 저희들의 관리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鄭宇澤 委員** 국장님, 꼬치꼬치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이유는 노동부가 산업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국회에서 한번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장께서 굳이 변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거의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질책하고 싶지만 그냥 이 지적만 하겠고 국장께서도 오늘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짐만 가지시면 제가 질의한 효과는 얻습니다.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37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역학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공동으로 하자는 제의가 와서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鄭宇澤 委員 그리고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제6조 제7항을 보면 산업안전공단에서 해야 될 일 중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도 있어요. 그렇지요?

○勞働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있습니다.

○鄭宇澤 委員 그런데 지금 제 자료를 보면 작년 까지 기술지원 요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勞働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그 업체에 대해서요?

○鄭宇澤 委員 아니, 그 업체가 아니라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나와 있는 공단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중 하나인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공단에 요청한 적이 없지요?

○勞働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그것은 공단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매년 사업계획에 포함되고 있는데 안전보건으로 해 가지고 1만 5000개 사업장이 2001년도, 작년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 이후부터 CLEAN 3D사업으로 해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2만 개 사업장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鄭宇澤 委員 제가 오늘 이 산업폐기물 쪽을 몇 가지 간단히 물어보는 것은 독성간염 집단발병의 경우가 하나의 극단적인 예, 단적인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산업재해예방에 대해서 매년 지적이 있어도 역력이 달라지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소홀히 해왔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해발생 후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차선책이고 최선의 방법은 역시 예방이기 때문에 예방쪽에 좀더 노동부가 신경을 써 주고 국장이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働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알겠습니다.

○鄭宇澤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允洙 鄭宇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노동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과 개선하신 고견들을 깊이 유념하셔서 앞으로의 정책개발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동부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允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계속)

나. 중앙노동위원회

다. 근로복지공단

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마. 한국산업안전공단

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 한국노동교육원

아. 노사정위원회

○委員長 李允洙 노동부에 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노사정위원회 이상 7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7개 기관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일괄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도 앞서의 노동부와 같이 국회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해당기관장을 정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朴仁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仁相 委員 7개 기관인데 질의시간이 10분입니까?

○委員長 李允洙 모자라면 제가 알아서 더 드릴게요.

○朴仁相 委員 산업안전공단 이사장님께 국정감사시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프레스 재해와 관련해서 안전장치의 점검 및 활용능력이 부족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전체 프레스의 66%에 해당하는 4만 2358대를 보유·사용하고 있다고 그당시에 통계는 그렇게 나왔지요?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예, 그렇습니다.

○**朴仁相 委員** 3년간 중대재해 및 위험기계·기구 등에서 발생한 재해의 27%에 해당하는 연평균 787명이 프레스에 의해서 재해를 당하고 있다고 통계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요?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예, 그렇습니다.

○**朴仁相 委員** 그래서 97년5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면제된 프레스의 정기검사 부활 등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도록 촉구한 적이 있지요?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그렇습니다.

○**朴仁相 委員** 산업안전공단 업무보고서 19쪽을 보면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검사 유인방안 강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예, 그렇습니다.

○**朴仁相 委員** 지적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되고 있는지,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좀 밝혀 주시면 좋겠네요.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저희도 프레스로 인한 재해가 많아서 정기검사를 부활해야겠다는 것 때문에 작년도에 비공식적이지만 감사원에 저희 의견을 설명했고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수 차례 접촉하고 노동부하고 같이 이것을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조정관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저희 업무보고서 19쪽에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검사 유인방안은 아직 노동부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되지 않았습시다마는 검사를 받지 않은 곳의 소규모 사업장,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받아야 되는 기계·기구·설비를 그냥 사용하고 검사를 받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전성 검사는 설계부터 해서 그다음에 성능검사, 완성검사 그리고 정기검사 이렇게 단계별로 받게 되는데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설계검사부터 할 수도 없고 해서 이왕 사용 중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계·성능검사를 면제해 주면서 완성검사와 정기검사 정도를 받도록 하고 양성화시키면 그래도 은폐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일제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이렇게 해 보려고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朴仁相 委員** 알겠습니다.

특히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 된 문제는 산업안전공단이든 노동부든 또는 같이 협조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사실상 재해로부터 방지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그렇습니다.

○**朴仁相 委員** 이것을 자꾸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만 보지 근로자들의 건강이라든가 재해문제에 대해서는 도외시해 버렸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재해와 관련해서도 전산업의 사망자 중 건설업 사망자가 24.3%에 이른다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분야에서의 획기적인 재해감소 없이는 전산업재해 감소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닙니까?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예, 그렇습니다.

○**朴仁相 委員** 그래서 획기적인 지원책을 촉구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 22쪽, 23쪽에 기존의 안전관리 대책만 나열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없습니다. 이사장의 소견을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망자가 제일 많은 것이 추락입니다. 추락 중에서도 67% 정도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가설기자재입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3억 미만의 영세 건축공사 현장 이런 곳의 3대 안전가설기자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부터 임차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처음으로 새롭게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안 넣었습니다마는, 건설현장은 계속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공정별로 파악하여 저희가 그때그때 사업장하고 네트워킹해서 책임전담제를 금년부터 구상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의 소규모사업장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기업체하고 하도급업체 간에 1만 개소 정도는 합동안전보건활동체제를 구축해서 직접 묶어주는 방식으로 하고, 금년부터 건설업체도 안전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좀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朴仁相 委員** 지금 계획대로 해서 확실하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사실상 이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매년 보고하는 형식보다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여 재

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朴仁相 委員** 다음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이사장님 나오셨지요?

○**韓國障礙人雇傭促進公團理事長 孫京鎬** 예.

○**朴仁相 委員** 여기에 보고된 자료 7쪽을 보게 되면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채용박람회, 총력구인개척, 국가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확대 노력,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등에 대한 작년도 공단의 실적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 업무보고 자료 14쪽, 15쪽, 16쪽을 보면 장애인 고용확대 및 직업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쪽짜리 업무보고 어디를 봐도 취업을 시키겠다는 말은 있지만 취업한 장애인의 이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직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韓國障礙人雇傭促進公團理事長 孫京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이 장기근속을 못 한다는 문제는 저희들도 익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노동시장의 입직·이직률을 보면 오히려 장애인의 입직이 배 이상으로 훨씬 높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봐서 취업했던 장애인이 직장 간에 이동하는 숫자가 상당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적재적소 배치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 그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직장으로 적재적소에 찾아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않습니다라는 그런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朴仁相 委員** 2002년2월6일 현재 기준으로 장애인 취업자 수가 총 8042명인데 이 중에서 이직한 장애인이 2523명으로 이직률이 31.3%에 달하고 있거든요.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 경증장애인보다도 주로 중증장애인인 2급, 3급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지요?

○**韓國障礙人雇傭促進公團理事長 孫京鎬**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朴仁相 委員**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취업하기도 사실 어려운 현실이고 그나마 취업이 되더라도 이직률이 3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장애인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장애인의 근속기간을 늘리기 위해 공단지 사후지도 등 철저한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습니까?

○**韓國障礙人雇傭促進公團理事長 孫京鎬** 한 가지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양청을 올립니다라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취업장애인 실태를 조사했더니 평균 근속연수가 비장애인의 5.7년보다 높은 6.4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자부하지는 않습니다라는 입직·이직률 비교, 노동시장 고용상황을 비교해 보더라도 그보다 더 장기근속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목적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직장 적응지도라든지 또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훈련직종 개편 그리고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력, IT 등 신산업 직종입니다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효과가 착착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朴仁相 委員**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평가를 철저히 해서 적재적소에 채용시켜야 높은 이직률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사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견을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그쪽에서도 경주를 하고 있지요? 열심히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障礙人雇傭促進公團理事長 孫京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朴仁相 委員** 한국노동교육원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韓國勞動教育院長 李銑** 예.

○**朴仁相 委員** 노동교육원 업무보고 1쪽에 보면 설립배경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노동교육의 필요성이 80년대 말 제기되었고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노사 각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 공존·공영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韓國勞動教育院長 李銑** 예, 그렇습니다.

○**朴仁相 委員** 업무보고 4쪽을 보면 노동교육원의 직제표가 나와 있는데 전체인원 49명 중 행정직이 무려 39명이나 되고 반면에 연구직은 3명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韓國勞動教育院長 李銑** 예, 그렇습니다.

○**朴仁相 委員** 어떻게 보면 직제가 교육원으로서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韓國勞動教育院長 李銑** 저희 교육원이 노사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기관의 전문화를 위해서 다각적

인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행정직이 사실상 교육전문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내부 교육도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朴仁相 委員** 노동부하고 의논을 하셔서라도 연구직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만 교육원으로서의 체계를 정상적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韓國勞動敎育院長 李銑** 예, 박사급을 중심으로 해서 충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朴仁相 委員**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지요?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예.

○**朴仁相 委員**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을 보면 노동위원회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조정업무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월드컵을 전후한 조정신청을 예측하여 조정신청 집중 시 대처방안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립되었거나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仁相 委員**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월드컵을 전후한 조정신청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특별대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작년과 달리 월드컵을 전후해서 조정신청이 집중할 것으로 보고 조정담당 심사관과 조정담당 공익위원 또 근로자·사용자 위원이 열심히 조정에 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朴仁相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 16쪽에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서 현지출장, 참고인 조사, 증인신청 유도 등 적극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하겠다고 써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인원충원 등 중노위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인원충원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고요……

○**朴仁相 委員** 계속해도 잘 안 되지요?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도 몇 사람이 충원되었습니다.

○**朴仁相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 18쪽 노동위원회

제도개선 추진부분을 보면 조정심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도개선 대상으로 준비되고 있는 안이나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仁相 委員** 시간을 조금 넘겼습니다마는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晟祚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晟祚 委員** 金晟祚 위원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국감 시에 노동부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를 위해서……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당시 15명이었습니까?

○**韓國障礙人雇傭促進公團理事長 孫京鎬** 11명이었습니다.

○**金晟祚 委員** 11명이 왔었고 직접 부담금을 징수함으로 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제고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韓國障礙人雇傭促進公團理事長 孫京鎬** 종전보다 징수율도 높아가고 부실하게 관리되었던 부담금 징수채권도 상당히 일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능률을 배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晟祚 委員** 원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금을 수금하셨습니까?

○**韓國障礙人雇傭促進公團理事長 孫京鎬** 당초에는 지방노동청에서 했습니다.

○**金晟祚 委員** 지방관서에서 하던 때와 그 임무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가져오고 난 이후에 변경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韓國障礙人雇傭促進公團理事長 孫京鎬**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晟祚 委員** 그리고 또 존경하는 朴仁相 위원님과 제가 1월 말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원법 개정법률안을 내놓았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韓國障礙人雇傭促進公團理事長 孫京鎬** 그 점은 말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金晟祚 委員**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일반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대해서 부담금을 다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못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이러한 의무고용률 2%를 달성시키기 위한 강제수단으로 부담금을 내게 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골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이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담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부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그것보다는 기획예산처 전체에서 일반예산으로 귀 공단에다 돈을 더 많이 출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서면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사장님께서도 더 많은 부담금을 달라고 노력해 왔었지요?

○**韓國障礙人雇傭促進公團理事長 孫京鎬**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노동부가 위탁한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좀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은 지금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라도 더 증액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좀더 달라고 애청한 일이 있었지요.

○**金晟祚 委員** 그러니까 결국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뜻을 받아들여 노동부에서 기획예산처에 폴 예산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전체 예산을 달라는 식으로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의무고용하지 못한 것만큼 부담금을 내거나 그렇지 못할 때는 적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고용하지 못한 종업원의 수는 얼마이므로 여기에 부담되는 금액만큼은 기획예산처에서 노동부로 넘겨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그것이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韓國障礙人雇傭促進公團理事長 孫京鎬** 공단 이사장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金晟祚 委員**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정신으로 볼 때는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韓國障礙人雇傭促進公團理事長 孫京鎬** 예, 결국은 부담금 내는 것도 일반회계에서 내는 것이니까 어떤 형태로든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기금에 일반회계 지원이, 부담금을 내든 아니면 일반예산으로 내든 좀더 증액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희망사항입니다.

○**金晟祚 委員** 박仁相 위원님과 제가 공동으로 발의한 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韓國障礙人雇傭促進公團理事長 孫京鎬** 알겠습니

다.

○**金晟祚 委員** 다음은 산재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담당하시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 崔成五입니다.

○**金晟祚 委員** 제가 수 차례에 걸쳐 질의를 했고 국감에서도 대구·경북지역에 산재병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었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예.

○**金晟祚 委員**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적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예, 그렇습니다.

○**金晟祚 委員** 약 10%도 안 되고 보통 사회주의 국가는 한 50%……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그렇습니다. 약 10% 미만 정도 될 것입니다.

○**金晟祚 委員** 이렇게 적은 나라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일본도 약 20~30% 이상이 공공병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더 높일 필요도 있고,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예.

○**金晟祚 委員** 그리고 현재 산재병원 등이 적자로 시달리는 병원은 거의 없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병원별로 보면 두 군데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金晟祚 委員** 있습니다마는 전체 병원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전체로서는 흑자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金晟祚 委員** 그렇다면 지역적 안배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근로자 수를 보더라도 대구·경북에 하나쯤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91년 이후부터 산재병원 증설을 안 하다 보니까 경북지역에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국감 이후에 노동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경북지역에, 특히 구미지역에 김천을 포함하고 산재환자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저희들 판단으로 아직까지는 현재 약 150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산재지정을 받은 병원이 약 4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재환자를 진료하는 데 크게 불편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포항이라든지 다른 경북지역과 연계해서 충분히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晟祚 委員** 제 마음속을 보시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구미나 김천을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우선 경북지역에서는 구미공단이 큰 공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金晟祚 委員**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대구, 포항, 울산공단, 경남까지 커버할 수 있는 병원의 입지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변경해서라도 지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기 바라고, 이 예산은 기획예산처의 승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기획예산처로부터 노동부로 넘어와야 하는 것입니까?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그것은 산특회계의 기금으로부터 출연 받아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처는 물론 해야 되고 다른 절차가 다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金晟祚 委員**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우선 예산절차상 그 전에 산재보험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晟祚 委員** 그래서 구미 주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 구미에 국가4공단도 만들어지고 근로자 수가 굉장히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것도 포함하고 포항, 울산, 대구 등까지 넓게 잡아서 어떤 지역이 좋은가까지 포함하여 새로 검토해서 그 검토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노동부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金晟祚 委員**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36초가 남았는데…… 고맙습니다.

金洪信 위원한테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金洪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信 委員** 金洪信입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께…… 진폐지정병원에 관한 질의인데, 앞서 노동부에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자세히 하지 않고 요점만 묻겠습니다.

진폐지정병원의 의료인력 부족현상은 알고 계시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진폐지정병원 문제는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洪信 委員** 예, 좋습니다.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金洪信 委員** 의료인력의 부족현상은 알고 계십니까?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예, 진폐병원뿐만 아니라 저희들 산재병원 전체의 진료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金洪信 委員** 태백 중앙병원의 경우 단 2명의 의사가 입원진폐환자 366명, 외래환자 40명을 진료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내과만 보면 그렇습니다.

○**金洪信 委員** 동해병원도 그렇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예.

○**金洪信 委員** 그러면 환자들을 하루에 다 보려면 의사 1명이 입원환자 183명, 외래환자 20명을 진료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단순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실제상으로는 대부분이 장기환자들이기 때문에 며칠만에 한 번씩 보고 처방하고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런데 장기환자라 하더라도 진폐환자의 경우는 상황이, 몸이 가렵다든지 내장기에 이상이 있다든지 매일 문제를 하소연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예, 그럴 경우는 처방합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니까 입원해 있기 때문에 며칠에 한 번씩이라는 얘기는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해도 2.36분당 1명의 환자를 보아야 하는, 물론 수치상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예.

○**金洪信 委員** 이렇게 되면 진폐환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진료가 될 수 없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진료하는 데 다소 부족하지만 내과환자만 놓고 보았을 때는 진료에 지장이 많지 않습니다.

○金洪信 委員 없다…… 이 진폐환자들을 직접 만나보았습니까?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예.

진료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다만 진료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불만들이 있습니다마는……

○金洪信 委員 아니, 환자를 만나봤더니 의사가 이렇게 적은데도 아무 이상 없다고 불평하지 않던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내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金洪信 委員 우리 같은 사람이 파악을 했는데 파악을 못 하다니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아니요, 제가 그런 불만사항을 듣지 못했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면 어떻게, 무슨 재주로 서울에 있으면서 진폐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제가 자주 가서 접하고 위문도 하고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환자들을 직접 접합니까? 그런데 의사가 적은 것을 한 번도 항의받아 본 적이 없어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죄송합니다. 저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내과 의사가 적다는 부분만……

○金洪信 委員 그러면 지금 의료법상 이것이 불법이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지금 의료법상으로 보면 저희들 의사나 간호사가 약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됩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니까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예, 그렇습니다.

○金洪信 委員 의사가 부족한 이유를 알고 계세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의사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부족한데 저희들 병원이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金洪信 委員 아니, 부족한 이유가 뭐냐는 말이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우선 법정 정원인력의 의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이유가 뭐냐니까요? ‘정원상’이라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의사들이 왜 그리로 안 가려고 하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태백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가는 것을 아직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도……

○金洪信 委員 아니, 그것은 제가 현장을 갔다와서 아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보수라든지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우선 태백지역이 오지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의사들은 꺼려합니다. 그리고 보수의 경우에는 경인지역보다도 태백지역은 높게 주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보다도 가족의 반대라든지 아동의 취학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金洪信 委員 그러니까 그 이유를 대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이유가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대책은 저희들이 아동문제까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사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여보세요, 여기를 보시란 말이에요. 의사가 부족하면 유인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책이 숙소 해결문제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고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인지역보다는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동해병원 허가병상은 341개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예.

○金洪信 委員 정선병원은 253개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예.

○金洪信 委員 그런데 제가 받은 실제 운영병상은 385개, 267개입니다.

왜 이렇게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통상 병원들이 허가병상하고 실제 운영병상이 있는데 허가병상보다 조금씩…… 사실은 허가병상이 풀 베드가 되고 다시 병상을 늘려 나가면 그때그때 허가내용을 갱신 받아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을 못하고……

○金洪信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료법 위반이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사실 의료관계는

.....

○**金洪信 委員** 아니, 의료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허가병상을 넘으면 현재 의료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그것은 허가내용하고는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에만 답변하세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허가병상 자체를 넘는 것이 바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는 제가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金洪信 委員**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운영했던 말이에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다만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동해병원 같은 경우는 진폐정밀진단을 받기 때문에 입원환자들이 많습니다.

○**金洪信 委員** 좋습니다. 그만하시고.....

○**委員長 李允洙** 아니, 위반인데 왜 대답을 못해. 그것 위반 아니요!

우리가 옆에서 들어도 위반인데.....

○**金洪信 委員** 여보세요. 제가 보건복지위원을 하다가 여기에 왔어요.

의료법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일정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의료법을 알고 있으면 이것이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두 가지인데.....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예.

○**金洪信 委員** 그러면 노동부장관은 왜 이것을 시인했어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그래서 수시로 시도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점검 받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처분을 내려 주면 저희들이 수정하고 결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면 지역 보건소에 병상허가 신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변경내용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병동을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병상이 부족하다면 지역보건소에 신청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청한 근거 있어요, 없어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신청을 아직 못했

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면 왜 안 했어요? 의료법 위반인데 왜 안 했어요? 신청은 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앞으로 그때그때 신청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신청을 안 했느냐는 말이에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지금까지는 통상 관례대로 허가병상.....

○**金洪信 委員** 통상 관례가 법을 위반하면서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운영병상을 허가병상보다 조금 낮게 하다가 환자가 차지 않을 경우에는 못하게 하는데 동해병원의 경우에는 진폐정밀진단을 받기 위해서 임시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엄밀히 보면 이것은 2개의 의료법 위반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예.

○**金洪信 委員** 의료법 위반을 했으면 지역보건소에 신청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안 했어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앞으로 수시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했으면서 왜 이렇게 엉뚱한 말이 많아요? 의료법 정확히 알아요?

보좌관, 의료법을 가져와요.

위원장님,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委員長 李允洙** 조금 더 드릴게요.

○**金洪信 委員** 동해병원은 입원환자가 358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허가병상은 341개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17명은 어디에 입원해 있어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병상은 저희들이 다른 사무실 등과 연계해서 병실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허가병상보다도 병상숫자가 많다는 것이지만 병실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병실 얘기가 아니에요. 기록상으로 이 17명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저희들이 병상은 다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어어? 허가병상을 초과해서 인원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끼어서 어디에 있

다는 말이에요? 그 병상 안에 1명이라도 더 들어가 있어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아닙니다. 저희들이 허가병상보다 병상숫자를 많게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병상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金洪信 委員** 입원환자가 358명이에요. 그런데 허가병상이 341개란 말이에요. 빼보세요. 17명이 어디에 있냐는 말이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허가병상은 341병상이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그보다 여유 있게 병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金洪信 委員** 그러면 병상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어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저희들이 한 380병상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면 더 불법이네요, 그렇지요? 380개를 운영한다……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38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생각해 보세요. 허가병상이 341개이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예.

○**金洪信 委員** 그러면 의료법상 44개 병상은 불법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예, 저희들이 신고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면 왜 불법운영했어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金洪信 委員** 국가기관에서 관행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게 통해요? 관행상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시설변동내용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개설허가상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洪信 委員** 이제 와서 죄송한 것이에요? 그렇게 잘난 짓하고 여태 변명이 늘어지더니 의료법도 제대로 모르고…… 이것이 국가기관이 아니면 병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만일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안 하는 병원 같으면 보건복지부나 어디서든 나가서 조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金洪信 委員** 행정처분 받지요? 이게 왜 행정처

분 안 받아요? 병상문제 가지고 행정처분 한 번도 안 받았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병상문제 가지고는 안 받았습니다.

○**金洪信 委員** 민간병원 같으면 이것은 행정처분 받고 난리가 났을 텐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아마 공익병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해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洪信 委員** 이런 기관에서 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앞으로는 수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洪信 委員** 앞으로라니? 여태까지 잘난 척하고 얘기하더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저는 지금까지 사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金洪信 委員** 아까 불법도 시인하지 않으려다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시인했는데 초과병상을 운영하는 것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위법입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면 위법으로 운영했으면 누군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누가 책임져야 돼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저희들이 추후에 신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洪信 委員**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고 지금 물었잖아! 누가 책임져야 돼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金洪信 委員** 만만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책임을 진다고 그랬으니까 책임을 지게 위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태도나 이런 것을 보면 의료법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얼렁뚱땅 넘어갈 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위원장이 보기에는 위법사항을 알았는데 여기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혹시 본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아마 바로 대답을 못한 것 같고, 또 병상숫자가 많은 것은 불법이지만 환자가 많다 보니 이것이 이권사업도 아니니까 아마 환자숫자가 늘은 것 같은데 앞으로 주의를 좀 시키시고……

○**金洪信 委員** 그것은 알겠는데 위원장님, 이런 문

제가 있어요. 이렇게 불법으로 병상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역보건소에 신청해서, 더군다나 이런 병상이면 보건소에서 아주 손쉽게 해 주고 오히려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추어 놓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委員長 李允洙 고의는 아니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예.

○委員長 李允洙 그러니까 위원님께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즉시 즉시 신고하세요. 병상까지 마흔몇 개가 남아 있으면서 무엇이 어려워져 못합니까?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얼른 인정하고 ‘잘 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문제를 이상하게 답변하니까 金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시는 것이니까 사과드리고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하십시오.

金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죄송합니다. 앞으로 수시 변경신고를 해서 법에 맞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金洪信 委員 이것 보세요. 다른 위원회에서 왔다고 해서 적당히 그냥 이것만 넘어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金洪信 委員 그런 생각이 아니면 왜…… 이런 위법을 저질렀으면 순순히 시인하든가…… ‘관행상 그렇다.’ 그랬잖아요?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병상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알겠습니다.

○金洪信 委員 일반병원 같으면 행정처분 받고 난리가 났을 것 아니에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죄송합니다.

○金洪信 委員 산재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하다 말았잖아요.

○委員長 李允洙 이따가 더 하십시오.

○金洪信 委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께서 지금 내용 들으셨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金洪信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사실 저도 솔직히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 다음에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洪信 委員 조치할 때 책임문제까지 반드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계신 분 직책이 어떻게 됩니

까?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입니다.

○金洪信 委員 내가 법령집을 드릴 테니까 법령집을 보고 앞으로 그런 엉터리 답변 좀 그만하고 제대로 하세요. 알았어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알겠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리고 이사장께서는, 이 문제는 책임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해서…… 연휴가 끝나면 어차피 상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때까지 정확하게 답변과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알겠습니다.

○金洪信 委員 지금 이사장께서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알았습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金洪信 委員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樂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樂冀 委員 우선 질의 전에 노사정위원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사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안 나오시고 상임 위원께서 나오셨는데 위원장이 무슨 유고이십니까?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사무실에 출근하셨다가 다른 급한 사정이 생겨서 아마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대신 참석하고 있습니다.

○金樂冀 委員 설령 급한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회보다 더 급한 사정이 있습니까? 국회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지 이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이 시간에 위원장께서 여기 오셨다가 양해를 구하고 가시는 것은 모르지만 대표자가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金樂冀 委員 이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노사정위원회 입장을 저는 잘 압니다. 소속은 대통령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소관이 라고 하나 노사정위원회의 모든 업무나 예산이 노동부 소관에 다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보고도 여기 와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는데 대표자가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오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것이지 이럴 수 있어요?

위원장님, 사전에 양해를 받았습니까?

○委員長 李允洙 사실 위원장이 오지 마라, 와라 그것은 아닌데 아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는 즉시 바로 위원회에 나와라.’ 해서 끝나는 즉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위원장이라고 해서 산하기관장이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겠다고 하는데 ‘야, 너 무조건 나와라……’ 나오라고는 했는데 급히 일이 있다고 해서 끝나면 즉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그렇게 하겠습니까.

○委員長 李允洙 위원장한테 양해를 받았다고 하면 나는 무엇이 됩니까?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죄송합니다.

○金樂冀 委員 국회가 1년 열두 달 365일 매일 열려서 국회에 와서 시간을 다 보내게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금년 들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적어도 금년 들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하는 업무보고는 어떤 이유로라도 대표자가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 잘못된 것이지요?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그렇습니다.

○金樂冀 委員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예.

○金樂冀 委員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에 발족한 비정규직특별위원회가 초기에는 분과위원회도 구성하고 전문가토론회도 개최하고 해서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예.

○金樂冀 委員 그런데 지난 12월 한국노총이 탈퇴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공전되고 있지요?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그동안에는 한국노총에서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막후에서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가 한국노총과 같이 의논을 많이 해서 2월18일에 정상화하기로 합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金樂冀 委員 이번 2월18일이요?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예, 그렇습니다.

○金樂冀 委員 그러면 정상화되는 것입니까?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그렇습니다.

○金樂冀 委員 그러면 비정규직특위가 정상화 되면 비정규직 보호문제를 거기에서 매듭지을 수 있

겠지요?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정상화되면 단 한번의 회의로써 매듭짓는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논의가 활발히 진척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金樂冀 委員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비정규직 문제,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 필수 공익사업 문제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꼬여가고 있어요. 물론 노사정 간에 3자, 4자가 모여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합의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알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두 번째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난 1월23일 노동3권 인정문제, 노조가입대상 직급문제, 조직형태 등 미합의 쟁점에 대해서 소위원회 차원에서는 의견접근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무위원회에 상정키로 했지요?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그렇습니다.

○金樂冀 委員 그런데 29일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는 또다시 이 안건을 소위원회로 되돌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되돌려 보냈습니까?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습니다마는 상당한 기간동안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를 논의해 왔는데 정부 측에서 단일안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노사정이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나와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정부 자체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무위원회에서는 그러지 말고 시간을 조금 더 줄 테니까, 예를 들면 2월 말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그동안에 정부 측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부의 단일안을 만들고, 또 한편으로 노사정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각지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문제에 관한 국민의 여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로 다시 안건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金樂冀 委員 이것을 제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노조문제는 이미 지난 98년2월 노사정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본 사안입니다. 당시 노사정 대표들은 1단계 직장협의회에 이어 2단계로 노동조합을 허용하고 그 구성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은 전국단위, 지방공무원은 광역 시도단위로 설립하고 단체교섭이 허용되고 국민적 여론 수렴을 거쳐서 시행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지요?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그렇습니다.

○金樂冀 委員 바로 이러한 원칙적 틀이 존재하는데도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노사정위원회가 주도하지 못하고 부처별 이기주의에 흔들리기만 하고…… 지지부진한 것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합의기구인, 합의하기가 어렵긴 어렵습니다마는 노사정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지금 金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점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소위 정부의 신뢰성과 관계된다고 해서 저희 위원장께서 관계되는 부처의 장관들을 소집하고 청와대 수석을 소집해서 이 문제에 관해 조속하게 통일된 입장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진척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金樂冀 委員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은 사기업도 아니고 정부 내의 문제인데…… 정부 스스로가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모든 것을 합의해 내면서 공무원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몇 년씩 끄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정부부처의 일부 시각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처를 잘 설득시킨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金樂冀 委員 물론 전체 공무원들이 가입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공련, 약칭 공노준에서 소위 법외 노조를 설립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는 보다 신속하고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이런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상임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2월 중에는 정부 측의 단일안이 마련될 것 같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3월 중순까지는 아마 중요한 시도단위의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이것을

기초로 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체납보험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는 총 66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가 감소한 것으로 업무보고 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체납액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막대한 금액의 체납보험료가 결손처리되었기 때문이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반드시 그렇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체납보험료가 2000년12월 말에 75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6700억 원으로 떨어진 것은 작년 1년 동안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金樂冀 委員 그러면 발전을 해야지, 재작년보다 못 하려면 뭐하러 합니까? 조금씩 발전하는 것 가지고 발전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어쨌든 노력도 했지만 결손처분한 그 액수가 결정적 숫자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그것은 아닙니다.

○金樂冀 委員 그게 아니에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94년부터 계속해서 10%, 20%, 30% 이런 식으로 증가되어 왔었거든요. 작년 1년 동안에 10% 감소하면서 수납액은 오히려 900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2000년12월 말에 4조를 건어들었습니다마는 2001년12월 말에는 4조 9000억을 건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9000억을 사실은 더 건어들으면서 체납보험료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7, 8억 원의 결손 때문에 체납보험료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金樂冀 委員 예를 들어 99년, 2000년, 2001년 전국의 사업장 수를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할 수 있습니다.

○金樂冀 委員 그러면 사업장 수와 보험료징수 건수와 금액 다 자료로 가능하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가능합니다.

○金樂冀 委員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고용보험 298억 원, 산재보험 체납액 중 결손처리된 금액이 892억 원 맞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맞습니다.

○**金樂冀 委員** 그런데 결손액이 2000년 557억 원에 비해서 214%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장께서는 결손액 증가한 것은 이야기 안 하고 더 견어 들인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체납액이 10.3% 감소한 것만 부각시키는 것 아닙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만드시 그렇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체납보험료가 96년부터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증가된 상태에 있거든요. 이 증가된 상태가 하향세로 꺾였고 또한 저희들이 수납액을 9000억이나 증가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간에 결손처분을 못 했습니다.

○**金樂冀 委員**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2000년10월1일자로 산재보험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또 99년 10월1일자로 고용보험도 노동부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그간에 사실은 결손처분을 잘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채권관리팀을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樂冀 委員**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체납액의 상당금액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 사실이 있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金樂冀 委員** 그래서 결손 최소화를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공단은 입법추진 중인 통합징수법의 통과만 기다리면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통합징수법이 시행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은 굉장히 심할 정도로 일선 지사에 체납상한제를 설정해 놓고 미진한 기관은 매월 불러 가지고 지사장들이 본부에 와서 발표하도록 하고 잘한 지사는 포상도 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金樂冀 委員**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장께서는 어쨌든 결손액의 감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본 위원이 지난 국감 때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납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방안을 구두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그렇습니다.

○**金樂冀 委員** 그런데 답변내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매출채권 부가세 환급금 압류 및 직원의 전문화 교육 등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강구한 것에 대한, 소위 교육했으면 교육일지, 신용카드 매출채권 부가세 환급금 압류 이런 부분에 대해 행위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할 수 있습니다.

○**金樂冀 委員** 제출해 주시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영세사업장의 보험료납부 편의제공을 위해서 LG카드와 협력하여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듭을 지었습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金樂冀 委員** 계약체결을 했어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일선에 시달해서 실제 하고 있습니다.

○**金樂冀 委員** 시행하고 있습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그렇습니다.

○**金樂冀 委員** 이것은 시행하고 계시다니까 자료는 필요 없고 앞의 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鄭宇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晟祚 委員**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아까 수치를 잘못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잘못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점유율이 한국이 13.3%, 일본 32.8%, 미국 34.6%, 독일 52%, 프랑스 69%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점유율이 한국이 형편없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允洙** **鄭宇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宇澤 委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 임기가 2년이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2년입니다.

○**鄭宇澤 委員** 산재의료원 감사는 임기가 몇 년입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지금은 3년입니다. 종전에는 2년이었습니다.

○**鄭宇澤 委員** “지금은”이라는 것이, **金吉聖** 감사

가 새로 금년 1월1일에 부임하셨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3년입니다.

○鄭宇澤 委員 임기가 3년이에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2년이었습니다.

○鄭宇澤 委員 주요간부 프로필, 오늘 노동부에서 자료 봐 준 것인데 여기에 보면 2002년1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서 2004년12월31일까지로 이것은 2년이 넘네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3년입니다.

○鄭宇澤 委員 그래서 3년이다…… 3년이네요.

그리고 산재의료원도 3년……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그렇습니다.

○鄭宇澤 委員 그러면 금년에 부임한 분들부터 3년입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3년입니다.

○鄭宇澤 委員 그것은 근로복지공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산업안전공단도 마찬가지입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다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韓國産業人力公團理事長 具天書 산업인력공단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저희 안전공단도 2년입니다.

○鄭宇澤 委員 산업인력공단이나 산업안전공단은 한 분은 2000년에 부임하시고 한 분은 2001년에 부임하셔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설명해 보세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께서는 금년부터 부임한 분들은 3년이고 그전에 부임한 분들은 2년이라고 그러는데 근로복지공단만 그런 것입니까, 다른 산하기관도 그런 것입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근로복지공단은 분명하게 종전에는 2년이었고 지금은 3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鄭宇澤 委員 금년부터 3년이 되었다……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鄭宇澤 委員 그런데 다른 데는 그냥 2년입니까? 산업안전공단 이사장님, 2년입니까?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그렇습니다. 저희 안전공단도 2년입니다.

(李允洙 위원장, 金樂冀 간사와 사회교대)

○鄭宇澤 委員 그것은 노동부에서 바꾸면 바뀌는 것입니까, 법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저희들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바뀌어서 3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鄭宇澤 委員 기관마다 다르다……

노동부차관 나오셨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다른 기관은 법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법만 바뀌었다 그것입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저희들은 하여튼……

○鄭宇澤 委員 아니, 내가 근로복지공단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산하기관인데 어디 감사는 3년이고 어디는 2년인 것이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는 법이 그냥 2년으로 되어서……

○韓國産業人力公團理事長 具天書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에는 산업인력공단법에 현재 2년으로 되어 있고 그 법이 아직 바뀌지 않아서 현재까지 2년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鄭宇澤 委員 그것도 좀 다르네요.

노동부 기획관리실장 나와 계시니까 노동부만 보지 말고 다른 데 산하기관의 감사가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하시고 이 법만 3년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것도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宇澤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왕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으니까 여쭙 보겠는데 산하기관의 감사 임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노동부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문일답하지 않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 제가 가서 60세 이상은 감사로 받지 않기로 원칙을 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연임할 경우라든지 또 잔여기간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원칙을 정해 버렸는데 지금 산업안전공단 金昌辰 감사가 누구시지요, 나오셨습니까?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상을 당해 가지고 오늘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鄭宇澤 委員 그런데 이분이 34년생이에요. 지금 69세가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003년까지 하면 70세가 되는데 물론 제가 金昌辰 감사 개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감사직을 임명할 때 노동부의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있으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안 들겠습니다. 감사를 여태까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받아왔고 잘못하면 낙하산식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지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든지 원칙은 세워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 노동부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勞働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알겠습니다.

○**鄭宇澤 委員** 노사정위원회에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작년 11월20일에 세종로 정부 1청사에서 노사관계고위정책협의회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날 張 위원장께서 초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鄭宇澤 委員** 그러면 제가 기억이 나시게 조금, 노사정위원장 초청으로 청와대 정무수석·정책기획수석·복지노동수석이 참석했고 그다음에 5개 부처 장관 李根植 행자부장관, 劉容泰 노동부장관, 金光雄 중앙인사위원장, 李瑾榮 금감위원장, 張在植 산자부장관 이렇게 참석했다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근로시간 문제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기 위해서……

○**鄭宇澤 委員** 주5일제도 이야기하셨지요?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예.

○**鄭宇澤 委員** 그때 주5일제 가지고 무슨 결정을 하셨습니까?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실무자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최대한 노사정이 주5일 근무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추진하되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정부입법을 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그런 논의를 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鄭宇澤 委員** 그런데 정부단독으로 주5일 근무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결정을 했다고 보도가 다 나왔는데……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결정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방안만 의논을 한 자리였습니다.

○**鄭宇澤 委員** 방안을 논의해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지요? 방망이 쳐서 한 결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시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시다마는 만일에 그것이 그렇게 되었으면 확실하게 이것을 내부적으로 노사정위원회 회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니까 이것을

참조로 해서 정부안으로 만들어 달라 하는 후속절차를 저희가 취했어야 되는데……

○**鄭宇澤 委員** 하여튼 결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신문에는 결정으로 났습시다. 그래서 제가 결정으로 표현했는데 정부 단독으로 주5일 근무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작년 12월19일에 劉容泰 노동부장관과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이 있지요? 같이 들어가셔서 대통령께 보고하셨지요?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예.

○**鄭宇澤 委員** 12월19일이면 얼마 안 되니까 확실히 기억이 나실 것으로 보는데요?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그렇습시다.

○**鄭宇澤 委員** 그때 보고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대통령께 무엇을 보고하셨습니까?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주5일 근무제에 관해서 합의도출을, 그것도 거의 비슷한 취지의 보고였습니다.

○**鄭宇澤 委員** 노사정위 논의결과를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정부입법 추진일정, 민간 및 공공부문 도입방안 보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대통령께 한 보고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텐데요.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지금 말씀을 올리면 통상 노사정위원장하고 노동부장관하고 같이 청와대에서 보고할 때에는 우선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주5일 근무제를 예로 든다고 하면 그동안에 주5일 근무제 추진을 위해서 노사정위원회가 어떻게 논의를 해 왔는가 하는 논의결과를 보고합니다.

○**鄭宇澤 委員** 논의결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논의결과가 있었고…… 제가 지금 자꾸 여쭙어 보는 초점이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의 시각이 정부입법으로 가는데 노동부랑, 조금 제가 말을 심하게 하면 죽이 맞았다 이거예요. 포인트가 그것이니깐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그렇지 않습시다. 거기까지만 보고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하는 나머지 문제는 노동부장관에게 바통이 넘어갔습시다. 그래서 노동부장관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던 노사정위원장이나 노동부장관이나 또 복지노동수석이나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 있었다, 무슨 내용으로 했다 하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밑에 지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분위기로 볼 때 대통령께서는 합의를 계속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鄭宇澤 委員 그날 참석하지 않으셨지요?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참석 못 했습니다.

○鄭宇澤 委員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에 묻는, 그날 張永喆 위원장이 뭐라고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현재 합의가능성이 낮은 상태라고 보고를 드리면서 논의된 내용을 정부에 넘겨 정부입법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물어보려는 초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 다. 그런데 위원장이 아니시니까 이런 질의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주십시오. 제가 듣기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해야지 정부입법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외람되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꾸 시간도 가서 그래서,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지요?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논의되고 있습니다.

○鄭宇澤 委員 11월14일 한국노총 주5일제 협상 전면중단 선언한 이후에……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그리고 구정 이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鄭宇澤 委員 그러니까 현재, 구정 후에 한다 그 말씀이지요?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예.

○鄭宇澤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樂冀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구정 이후인 18일에 만난다는 게 비정규직특위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단축과 관련해서도, 그 시간단축은 무슨 소위에서 다릅니까? 노사관계 소위에서 다릅니까?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근로시간단축 문제는 근로시간특위에서 다루어 왔는데 특위 손을 떠나 가지고 세부적인 협상단계입니다. 최고위층의 협상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노사정위원장하고 노총위원장하고 경총회장하고 만나는 단계라든지 총장들하고 저하고 부회장하고 만나는 단계라든지 노동부차관과 같이 만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런 접촉을 아마 구정 이후에는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樂冀 알겠습니다.

○鄭宇澤 委員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님께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16쪽을 보면 건강도우미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신 것인가요?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작년 4/4분기부터 시작했습니다.

○鄭宇澤 委員 현재 운영을 보면 근로자에 대한 스트레칭기법도 가르쳐주고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자격이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하십니까?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이 사람들은 간호학과 보건관계를 전공한 대학졸업자 혹은 대학 졸업예정자를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鄭宇澤 委員 이 사람들 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공공근로에 준해서 1일 2만 5000원을 줍니다.

○鄭宇澤 委員 4/4분기부터 운영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텐데 금년에 3만 개소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지요?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예, 금년도 말까지 3만 개소에 대해서……

○鄭宇澤 委員 금년도에 이렇게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이것은 저희 공단의 일선 지도원이 건강도우미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10인 미만 사업장 3만 개소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鄭宇澤 委員 알겠습니다.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냥 여쭙본 것입니다.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열심히 하겠습니다.

○鄭宇澤 委員 그리고 26쪽에 보면 직업병 조기발견 체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지요?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예, 그렇습니다.

○鄭宇澤 委員 이것이 새 업무계획에 나왔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요? 작년에도 나왔고 그전에도 다해 왔던 것인데 금년에 직업병 조기발견 구축과 관련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특별히 달라진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업병 조기발견 체제 구축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안전보건

연구원이 센터가 되어서 전공의들 그리고 질병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노동부, 공단 또 서울대학병원 등 5개소의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서 직업병 조기발견 체계를 확장시키자 그래서 내년쯤부터는 지금보다 월등히 발전된 형태로 하고자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鄭宇澤 委員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종합병원이 이것과 연계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더 연계시키려는 계획도 있습니까?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는 다섯 군데 인천, 구미,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서울대 등 큰 데도 참여시켜서 전문가회의를 해서 그분들도 참여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鄭宇澤 委員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금 종합병원 연계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이 예년에 비하면 조금 미약한 점이 있으니까 보강한다든지 뭐가는 달라져야 되겠다는 점에서 얘기했고 계획을 세우신 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宇澤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국노동교육원장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 잘한 것 같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하는 것을 한두 가지 짚어주시고 금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것이 있는지 작년에는 없었던 프로그램인데 이번에는…… 보고자료를 보니까 어떤 것이 새프로그램인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금년에 우리 노동연구원에서 개발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국회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勞動教育院長 李銑 교육프로그램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업종별 토론회를 두 번 했습니다. 화섬업종하고 호텔업종 토론회를 했는데 그 토론회의 교육적인 성과가 상당히 높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초에 각 지역을 순회하는 토론회도 상당히 성과가 많았다고 봅니다.

금년도부터는 내부적으로 고성과 참여작업장을 위한 과제를 매뉴얼화시키고 전문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鄭宇澤 委員 작년에 운영했던 것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韓國勞動教育院長 李銑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인원도 부족하고 해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나가는 나가는 데 진도가 상당히 늦은 상황입니다.

○鄭宇澤 委員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해서 노동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한 것을 저한테도 하나 보내 주시고 원장님이 노동부에 자꾸 졸라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노동부는 절대 떡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개발하려고 한다고 자꾸 푸쉬해서 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 안을 1/4분기 중에 내서 4월에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다 드리든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勞動教育院長 李銑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鄭宇澤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樂冀 鄭宇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承哲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哲 委員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여쭙겠습니다.

신임 李相周 교육부총리께서는 지난 2000년4월 다른 교육학자들과 공동으로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다.'라는 저서를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李 부총리는 교육붕괴의 원인을 지적하면서 그 중의 하나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전교조 합법화 조치를 꼽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보도에 그렇게 난 것을 본 것 같습니다.

○李承哲 委員 본 위원은 전교조 합법화를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법이나 불법이나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발전을 위해 사회의 통합을 이끌어야 할 노사정위원회가 교육붕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저희들로서는 소위 전교조를 합법화시켰다는 것은 사실상 98년2월에 국난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사정 간의 합의가 필요한 그 시기에 전교조 합법화 이 문제도 정리하고제 도입이라는 것과 같이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였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노사정이 합의한 것에 대해서……

○李承哲 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논점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노사정위원회가 현 사회와 국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중대한 역할과 위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존경하는 金樂冀 위원님께서 화를 안 내셨으면 제일 어린 제가 크게 화를 내려고 했습니다.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죄송합니다.

○李承哲 委員 노사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반드시 다음 번에 나오셔야 되고 저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계속 빠지시는데 그렇게 사사로운 일에 몰두하는 분이시라면 노사정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내놓으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각오를 하시고 정신무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가장 어린 국회의원이 말씀했다고 전해 주십시오.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예, 고맙습니다.

○李承哲 委員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011년 비전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펴낸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평화적인 대타협을 목표로 설립된 노사정위원회가 대표성과 전문성이 부족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대표성문제에 대해서는 李承哲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동계가 양대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노총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축에 상당히 흠결이 있다 하는 뜻에서 그 지적은 일견 수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성문제에 있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현상을 볼 것 같으면 노는 노대로 정책브레인들이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회의에 임하고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자체 연구실을 통해서 개발한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계다가 노사정위원회사무처에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위원들이 10명 가까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10명인데 그 중에 상당부분이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또 해당부처의 전문가가 와서 같이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문제는 크게 나무랄 데가 없다 하는 뜻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다만 더 광범위한 여론수렴, 전문성에서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사정위원회가 개선해야 될 방향 중의 하나가 대학교수들로 또는 다른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

범위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李承哲 委員 알겠습니다. 전문성부분은 대학교수만으로 이루어져서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현장을 경험하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거 기용해 주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그리고 대표성문제는 지금 노사정위원회를 대표하시는 분도 국회 이 중요한 자리,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다. 대표성은 여기에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꼭 전해 주십시오.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예.

○李承哲 委員 그리고 의사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합의기구가 아닌 협의기구로 운영방식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합의도출에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지요? 합의도출 때문에 협의가 아닌……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예.

○李承哲 委員 그렇다면 합의가 아닌 협의기구로 전환하게 된다면 본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노사정위원회는 합의기구라야지 존재하고 협의기구가 되어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노사정위원회의 가입·탈퇴는 자유입니다. 노사단체가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탈퇴할 수 있으면 탈퇴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흔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는 노동계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들리리로서는 것이기 때문에 불참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합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느냐 그래서 정책적으로 실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합의시한을 둔다는 문제 소위 효율성개념을 도입하는 문제, 이 문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일정한 시점까지 합의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총체적인 결과를 묶어서 노사정위원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결과는 이것밖에 없다 하

는 형식으로 해서 정부에 보내서 나머지는 정부가 알아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承哲 委員 합의가 원칙이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첨예한 세 단체가 서로 싸우다 합의가 안 되고 낯새는 일이 있다는 얘가지요. 그렇다고 중대한 노사문제를 결정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기간을 정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단 협의로 하는 방식으로 하고 구속력을 주어서 거기에 따르는 방식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承哲 委員 근로복지공단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기실업자에 대한 자영업 창업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담보보증능력이 취약한 장기실업자계층과 신규 청년실업자들의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는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그렇습니다.

○李承哲 委員 그런데 지원조건이 자금수요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지워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을 보면 전세와 월세보증금이 서울시와 광역시는 최고 2억 원, 기타 지역은 최고 7000만 원이고 특히 월세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월세 및 관리비가 총 80만 원 이내로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하고 연리 7.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 균등 납부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알고 있습니다.

○李承哲 委員 그리고 월세의 경우에는 공단지원금에 대한 보증금 상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6개월분에 해당하는 월세보증금 납부 또는 500만 원 한도의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아시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李承哲 委員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지지 않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금리가 낮아서 대부분의 점포주가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고 월세를 높여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치가 좋은 점포는 권리금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물주는 전세권 설정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그 추세는 알고 계신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알고 있습니다.

○李承哲 委員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조건에 맞는 점포를 얻어서 창업을 하려면 실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입지가 좋지 못한 곳에 점포를 구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아예 포기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상황도 이해하시겠어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李承哲 委員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지원절차를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제약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재원이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차입재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금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높은 이자, IMF사태 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회수가 안 된다면 나중에 상환할 때 저희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제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도시는 7000만 원 또 서울 대도시는 1억 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자율이 7.5%로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위 중심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점포를 얻는데 그쪽에 해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자금형성이 ……

○李承哲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허울 좋게 규정만 있어서는 아무 도움을 안 주는 것이지요. 현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고 있다는 얘가지요. 그러면 이것을 아예 운영하지 말든지 아니면 실효성있게 대폭 개선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만 탓하고 개선할 의지가 없다면 허울만 좋은 제도를 무엇하러 운영합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그런 제약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쥐고 있는 관계기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李承哲 委員 이자가 기존 다른 정책자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높습니다.

○李承哲 委員 높은 이유가 신청실적이 부족해서

라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알고 있습니다.

○**李承哲 委員** 현 실정 상황도 안 맞고 이자도 높고 이런 부실한 제도를 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에 더 쓰든지 하지요. 이자율을 낮출 생각은 전혀 없어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원리금도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차손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작년에도 기획예산처하고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李承哲 委員** 다른 기관의 정책자금보다 이자율이 높다고 인정하셨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관보다 적게는 못할 망정 비슷하게 낮출 의향은 없냐고 여쭙보는 것입니다.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근로복지공단 입장에서는 낮추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李承哲 委員** 왜 근로복지라는 말이 있습니까? 열악한 근로자들에게 복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자율이 높고 문턱이 높으면 이 자금으로 실질적인 복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보다 앞장서서 이자율을 낮추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개선을 해야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위원님,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채원을 98년도에 조성을 했거든요. 그 당시 IBRD 차관이랄지 채권을 발행해서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이것을 다시 상환해야 하는 저희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추면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이차손보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4년에 상환하기 어렵습니다.

○**李承哲 委員** 정부차원에서 특별회계를 해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이 사회의 가장 열악한 계층이 노동자, 근로자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이 자금의 이자율이 다른 정책자금보다 높고 문턱이 높으면 이런 것은 소모적인 제도 아니겠어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저희들이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자율을 5.5%로 인하한다면 금년에 15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2003년에는 87억 원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차손보전을 일반회계에서 해 주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李承哲 委員** 근로복지공단에서 복권사업도 하고

있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복권사업 하고 있습니다.

○**李承哲 委員**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은 어디에 쓰고 계세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그것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李承哲 委員** 그러면 그 자금을 여기로 전용하거나 지원할 생각은 없어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그것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李承哲 委員** 회계를 고쳐서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할 의향은 전혀 없으신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실질적으로 다른 회계에서 들어오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그 당시 98년도에 조성해서 가지고 있는 원금을 잘 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라는 요즈음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李承哲 委員**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자율을 낮추고 실질적으로 근로자 복지에 도움이 되고 문턱을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대안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承哲 委員** 그리고 한 두세 가지 문제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樂冀** 李承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全在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在姬 委員**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님, 업무보고 31페이지의 2001년도 1일 평균 환자 수를 보면 입원도 그렇고 외래환자도 2000년도보다 줄었는데 경영수지는 2000년도에 28억 4500만 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46억 8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추후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배경은 산재의료관리원이 수지를 개선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정부가 너무 수지에 급급해서 아까 존경하는 金洪信 위원님이 지적하는 문제를 야기한다면 이것은 정말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소탐대실이고 산재의료관리원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료요청

을 합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알겠습니다.

○**全在姬 委員** 그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님,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에서 독자적으로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장애인에게는 훈련비용을 지원(1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자적인 전담훈련기관을 설치하는 것과 전담훈련기관의 일부만 이용하고 가능하면 기 있는 일반을 위한 훈련시설을 이용하는 것과의 효율성에 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동안 실시해 보니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은 문제가 있는지 또 향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방향의 구체적인 자료와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韓國障人雇傭促進公團理事長 孫京鎬** 알겠습니다.

○**全在姬 委員**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 한국기술교육대학 이사이지요?

○**韓國産業人力公團理事長 具天書** 예, 현재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全在姬 委員** 이사장으로 계시고 인력개발이사가 이사이지요?

○**韓國産業人力公團理事長 具天書** 예,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全在姬 委員** 한국기술교육대학 총장님께서 임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표를 제출해 놓고 있지요?

○**韓國産業人力公團理事長 具天書** 예, 그렇습니다.

○**全在姬 委員** 그리고 2월28일 이사회를 열어서 처리할 계획이지요?

○**韓國産業人力公團理事長 具天書** 예, 그렇습니다.

○**全在姬 委員** 제가 저간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이것에 대해 바람직한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韓國産業人力公團理事長 具天書** 예, 알겠습니다.

○**全在姬 委員** 개인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이야말로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서 부당하게 운영된다면 교육기관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의치 않으면, 필요하면 제가 증인신문 하겠습니다.

○**韓國産業人力公團理事長 具天書** 예, 알겠습니다.

○**全在姬 委員** 그다음에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사항 이행에 대해서 노사의 이견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노사 공히 평가를 해서 다같이 공감대를 갖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개선사항을 내 준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이 자료를 만드실 때 張永喆 노사정위원장과 安榮秀 상임위원님이 직접 검토하셨습니까?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저는 대충 검토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 하나 하나를 일일이 다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全在姬 委員** 국회에 내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요?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처음에 자료를 가져 왔을 때 대단히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것 이런 것은 고쳐서 다시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한 번 되 돌려 보냈는데 그다음에 해 가지고 대충 몇 가지를 보니까 제대로 된 것 같아서 그냥 보내도 좋을 것 같아 국장에게 확실히 읽어보고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全在姬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합의사항 이행현안 노사정위원회 재검토 결과,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1기 합의사항 82번, 사교육비 절감대책 마련·시행 이래 가지고 이행점검반 평가결과 이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으로 가구당 사교육비 평균지출액 등이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기 합의사항은 1999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002년도입니다. 2001년 말까지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교육비가 감소되었다고 하는 근거자료는 무엇입니까?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그것은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근거로 사교육비가 감소되었다고 했는지 위원님께 확실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全在姬 委員** 필요하시면 만드신 담당국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勞使政委員會運營局長 河甲來 준비를 못 했습니다.

○全在姬 委員 아니, 자료에 사교육비 평균지출액 등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근거 자료도 없이 이렇게 씁니까?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全在姬 委員 좋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제가 아는 통계와 상식으로는 2001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1999년도보다 악화되었으면 악화되었지 개선되지는 않았 습니다.

상임위원님, 동의 안 하십니까?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全在姬 委員 그런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저에게 사교육비가 감소되어서 이행되었다고 보고서를 주는 데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 하나 작성하는 데서도 노사정위원 회의 자세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金樂冀 간사, 李允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작성해서 국회에 낼 때는 반드시 근거에 입각해서 작성하시고 평가해야만이 노사가 승복할 수 있고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른 데도 있는데 제가 하나만 지적한 것입니다.

1기 합의사항 62번, 기업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에 노력하고 노조는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정부는 노사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이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노동부장관에게 예를 들어서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는 99년 331건, 2000년 705건, 2001년9월까지 966건, 그것도 기소, 송치된 것은 99년도 122건, 2000년도 277건, 2001년9월까지 268건입니다.

평가를 하실 때에는 현상을 정확하게 보시고 노사의 아픔과 애로, 문제 제기사항에 대한 깊은 고뇌와 검토를 거쳐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쳐 주시겠습니까?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예, 그렇게 하겠습

니다.

○全在姬 委員 반드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韓國障人雇傭促進公團理事長 孫京鎬 위원님, 아까 요구하신 자료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독자적 훈련비용 지원문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훈련시설에서 훈련받을 때 도와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 데나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떠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全在姬 委員 아닙니다. 이 사업을 실시해 본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확대하겠다는지 해보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확대하겠다는지 하는 지금까지의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을 정확하게 주시면 그 보고서를 받아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여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韓國障人雇傭促進公團理事長 孫京鎬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全在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를 마쳤습니다. 마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洪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信 委員 아까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산재의료관리원, 그 사이에 법령집을 보셨습니까?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자료를 못 가지고 와서 지금 순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면 제가 봐 드릴게요.

의료법 제32조(시설기준등)인데 시설, 의료인의 정원, 이것이 의료법에 나와 있어요. 의사정원기준을 알고 계세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예, 알고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정원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의료법상으로는 정원기준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그리고 외래환자는 3명을 1명으로 계산해서 20명당 의사 1명을 두는 것으로……

○金洪信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입원환자가 이렇게 많고 외래환자가 있을 때 대충 계산하면 여기에 몇 명쯤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까?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한 200명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金洪信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동해병원만 보면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동해병원은……

○金洪信 委員 동해병원을 보면 한 19명쯤 필요하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예, 그렇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런데 현재 의사가 2명이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현재 의사가 4명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면 의료법상 열 몇 명이 부족한 것이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그렇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면 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하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예.

○金洪信 委員 또 하나 병상 수 변경신고 문제인데 의료법시행규칙 제23조의2 네 번째,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은 반드시 변경허가신청서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97년에 법 개정된 것인데, 그렇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예.

○金洪信 委員 그런데 그것을 안 했으니깐 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예, 규칙위반사항입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면 아까는 시인을 안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몰라서 안 했습니까, 관행이라 그냥 넘어갔습니까?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저희들이 사실 그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해 왔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래서 제가 의료법을 보고 얘기하자고 그랬지요.

그리고 답변태도를 문제삼았는데, 제 질의자료를 갖고 계시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예.

○金洪信 委員 그것을 보면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는 것이 드러날 것 아니에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예.

○金洪信 委員 그러면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해 책임 묻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사장께서 관리를 하다 보면 책임 묻는 것보다 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그렇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면 답변태도는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죄송합니다.

○金洪信 委員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어떤 분인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답변태도에 문제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알겠습니다.

○金洪信 委員 저는 처벌하거나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었으면 제대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억지로 의사 수를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런 어려움을 모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점에 관해서는 아까처럼 그러지 마시고 정중하게 사과를 해서 넘어가고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로 정리를 하십시오.

○産災醫療管理院理事長 崔成五 제가 문제인식을 충분히 못 해서 죄송하고 답변의 내용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洪信 委員 고맙습니다.

아까 한 문제 가지고 제대로 못 짚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환자에 대해서 진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적정한 진료를 했는지 심사한 후에 청구기관에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그렇습니다.

○金洪信 委員 진료비 급여를 어디서 심사합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지금 서울·경인지역과 장성지역은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중앙심사제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결국 진료비 심사는 공단에서 하는 것이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그렇습니다.

○金洪信 委員 공단은 의료기관이 허가병상을 초과해 청구했는지 심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심사를 한 다음에 실사까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아까 말씀 들으셨겠지만 현재 병상은 358개인데 신고는 341개가 되어서 허가병상 341개보다 17명을 초과했습니다, 그렇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金洪信 委員 그러면 상식적으로 17명 분은 더 지불되었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저희들 얘기는 산재환자를 얘기합니다.

○金洪信 委員 물론 산재환자지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허가병상보다 많은 입원환자 요양급여를 청구할 것 아니에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그렇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면 그것은 이미 청구한 대로 나갔을 것 아니에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나갔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초과된 것이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논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金洪信 委員 이것은 심사부서에서 제대로 안 했다……

이것을 제가 만약 봤으면 ‘어, 이것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심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이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저희들이 그간에 그 부분은 인식을 못 했습니다.

○金洪信 委員 못 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산하기관이라 봐 주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그런 것은 아니었고 저희들이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게 문제인데요, 참 답답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이 관리가 안 되면 소규모 산재지정병원들의 부당·허위·과잉 청구사례를 어떻게 막겠느냐 이것입니다. 대형병원이 이럴진대 소형인 경우에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노동부나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되면 해당직원이 몰라서 인식을 못했더라도 봐 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오해를 받아서 담당직원만 다치고 문책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허가병상 불법 문제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언제까지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시간을 좀 주십시오.

○金洪信 委員 물론이지요.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인식을 하셨으니까 고쳐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보건소에다가 시설이 늘어났다는 것을 제대로 신고도 하시고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金洪信 委員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체납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 반이 넘는 사업장이 보험료를 안 내고 있고 산재보험의 경우도 40%가 체납을 하고 있는데 체납사업장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사업장이 체납이 되면 체납된 시점부터 일선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상이면 지사장이 관리를 하고……

○金洪信 委員 그런데 그동안 산재보험 체납액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그렇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런데 두 보험제도의 체납액이 많은 것은 체납사업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그런 점도 있고요……

○金洪信 委員 그러면 우선 장기체납사업장을 정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그래서 저희들이 체권관리팀을 작년 1월1일자로 발족했습니다.

○金洪信 委員 체납기간별 사업장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저희들이 작년 10월 8일자로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바꾸어서 신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전산상의 안정을 기하지 못해서 자료제출이 늦었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면 지금은 줄 수 있습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지금 현재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안정화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金洪信 委員 그러면 컴퓨터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그렇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것만 복구가 되면 이 자료는 이상 없이 줄 수 있습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그렇습니다.

○**金洪信 委員** 체납기간별로 체납사업장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징수가 제대로 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산에 문제가 생겼다면 왜 잘못되었는지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됐습니다.

용량부족 때문이었고 지금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몇 개월 이상 체납을 하면 주요관리대상 체납장으로 정하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체납이 되면 몇 개월도 아니고 일단 바로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한 10일 전후로 해서 관리에 들어갑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면 그런 자료는 지금 줄 수가 있겠네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그 부분이 지금 전부 전산시스템 속에 들어 있어서……

○**金洪信 委員** 전산이라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그쪽에 몽땅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주요관리대상 체납장이 정도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주십시오. 기간별·업종별·규모별로 체납사업장 리스트를 만들고 각 지사에 보내서 체납이유를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납부가능한 사업장은 납부토록 하고 도산위기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을 이사장께서 공감하십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마는 2000년7월1일자로 산재보험도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고용보험도 98년10월1일자로 확대되다 보니까 사실은 한 120만 개 사업장 정도 됩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바로 생성되었다가 바로 없어지고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金洪信 委員** 좋습니다.

이사장님, 어렵다는 것은 말씀 안 하셔도 알 만한 사항이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 세워 나가야 됩니다. 지금 뽀족한 대책이 아니면 차선, 차차선이라도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산재보험환자가 건강보험환자로 전환되어서 진료받는 사례가 많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제가 찾아 보니깐 많아요. 그렇게 되면 부정수급이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金洪信 委員** 부정수급을 막을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자료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잘 몰라서 건강보험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金洪信 委員** 이런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올 1월18일에 자료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달했어요, 그렇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金洪信 委員**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산재보험환자가 건강보험환자로 전환되어서 진료받는 사례가 있으면 건강보험에도 문제가 생기고 산재보험 전체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수급 때문에 국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러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올 1월18일에야 겨우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그렇습니다.

○**金洪信 委員** 이것을 늦게 전달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인식을 못했습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별도로라기보다도 그간에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에 혹시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자문변호사한테 자문받느라고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지연사유는 아닙니다.

○**金洪信 委員** 수 년 동안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갔습니다. 결국 손해본 것은 국민이거든요. 그것은 인식을 하시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金洪信 委員** 하여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의지가 있습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지금 사실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金洪信 委員** 이 문제점을 지적하니깐 대책을 세워서 다음 국회 상임위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오.

-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알겠습니다.
- 金洪信 委員 이상입니다.
- 全在姬 委員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允洙 全在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全在姬 委員 노사정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지난 2001년8월 비정규직 규모 및 실태에 대한 쟁점을 축소하고자 노사정이 합의한 통계청 부가조사표를 통해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했지요?

당시 결과는 도출되었는데 노사정 간의 입장차이로 현재까지 공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을 통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비정규직 규모에 대해서는 노동계 주장, 경영계 주장, 학계 주장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비정규직근로자대책 특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다면 아울러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 勞使政委員會常任委員 安榮秀 예, 제출하겠습니다.
- 全在姬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允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承哲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李承哲 委員 먼저 산업안전공단에 여쭙겠습니다.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여수산업단지 내 여천NCC라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사인이 장기간 벤젠에 노출되어 발병한 백혈병으로 밝혀졌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여천NCC입니까?

- 李承哲 委員 이것은 신문지상에도 나고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그것도 파악 못 하고 계셨어요?

-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LG석유화학도 있고 그래서요.

- 李承哲 委員 어쨌든 장기간 벤젠노출로 인해서 암 발생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예, 그렇습니다.

- 李承哲 委員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이 문제에 관해서 벤젠노출기준이 현행은 10ppm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한 1ppm 정도에 노출되어도 백혈

병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노출기준을 좀 낮추는 것을 현재 노동부와 협의 중에 있고 또 노후설비 석유화학공장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李承哲 委員 그런데 이것이 최근뿐만 아니고 90년과 92년에 각각 백혈병으로 사망한 직원들이 벤젠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심각합니다. DMF나 벤젠 같은 경우는 독성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산업안전공단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벤젠으로 인한 피해실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承哲 委員 근로복지공단에 여쭙겠습니다.

현재 벤젠으로 사망한 여천NCC 근로자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 신청한 산재보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가 있으세요?

-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당초 신청을 했는데 유족 측이 요구해서 반려되었습니다.

- 李承哲 委員 유족 측이 요구를 해서 반려를 해요?

-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 李承哲 委員 산재보험금을 안 받았다고 반려했습니다?

-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妻 측에서 회사하고 보상금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서를 반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반려해 주었습니다.

- 李承哲 委員 그러면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가 90년, 92년에 각각 백혈병으로 사망한 직원들도 벤젠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때도 유가족들에 의해서 산재보험 신청이 있었습니까?

-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그것은 없었습니다.

- 李承哲 委員 이렇게 벤젠으로 죽고 사망을 했는데 산재보험 신청을 안 하고 스스로 철회까지 하고, 어떻게 그러지요?

-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앞으로 다시 신청을 할 것입니다. 회사 측하고 보상 문제가 있으니까 반려요청을 했는데 아마 그것이 끝나면……

- 李承哲 委員 회사의 압력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그것은 아닙니다.

○**李承哲 委員** 어쨌든 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써서 벤젠으로 인한 사망유가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혜택이 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재 건설업의 경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일정방식에 의해서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자들의 신고금액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 실사가 현재 10%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서 허위신고에 의해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건설업의 경우에 현재 실사실적이 10%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제대로 징수도 못 하고 재원도 확보 못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저희들이 실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李承哲 委員** 하는데 건설업의 경우에 10%에도 못 미친다니까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저희들 목표량이 있으니까 그 목표량에 미달한 부분은 금년도에 계속 할 것입니다. 저희 인력이 그간에……

○**李承哲 委員** 확정정산 실사가 현재 목표의 90%도 아니고 10%에도 못 미친다니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기금관리나 보험관리가 되겠습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위원님,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李承哲 委員** 알겠는데요, 기준이 있든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실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산재나 고용보험 분야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량으로 계속 배출되고 있는 노무사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실사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견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무사 출신들이 그 업무뿐만 아니라 보험료 징수 쪽으로 활성화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움직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징수법이 2003년1월1일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 전 단계에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수렴해서 통합징수법

에 반영하려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李承哲 委員** 어쨌든 전문가들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행정업무 분산효과도 있고 실질적인 실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바람직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께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의 훈련기관 배치현황을 보면 지금 서울과 경인지역에 직업전문학교가 2개, 전국으로 따지면 21개이고 기능대학이 5개, 전국으로 따지면 22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청소년 실업이 서울과 경인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기능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기존의 기능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최근 디지털시대를 맞이해서 디지털마인드와 디지털기능을 가진 청소년들에게는 좀 동떨어진 구산업적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디지털시대를 맞이해서 디지털한국을 지향하고 있는 입장에서 디지털기능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韓國産業人力公團理事長 具天書**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지식기반산업 직종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99년도에 14.1%에서 2000년에 23%, 2001년에 33.5%, 금년도에 41.6%가 되었고 내년도에 지식기반산업 직종이 45%로 개편되어서 그런 청년들에게 적합한……

○**李承哲 委員**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기반산업 직종으로 개편한다고 하면서 그 예로 섬유산업의 메카인 대구에 섬유패션기능대를 설립하셨지요?

○**韓國産業人力公團理事長 具天書** 예, 그렇습니다.

○**李承哲 委員** 또 사천에 항공기능대 개교하셨지요?

○**韓國産業人力公團理事長 具天書** 예, 그렇습니다.

○**李承哲 委員**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한다면 수도권 청소년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학을 연계하고 디지털산업전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디지털산업단지 KICOX본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구로공단에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학연계 차원에서 여기에다가 디지털기능대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韓國産業人力公團理事長 具天書 우선 서울하고 수도권 북부지역에 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신설 타당성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기능대학 문제는 재출연기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학교법인 기능대학과 노동부와 함께 협의를 거쳐서 자세한……

○李承哲 委員 전에 노동부장관께서 적극 검토하시겠다 그리고 구로공단이 지금 디지털밸리로 바뀌고 있으니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노동부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디지털기능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韓國産業人力公團理事長 具天書 알겠습니다.

○李承哲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允洙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산업안전공단 이사장님 하나만 물어 보시다.

아까 李承哲 위원께서 벤젠과 관련해서 많은 환자가 속출한다고 했는데 벤젠의 노출기준을 낮춘다고 말씀하셨지요?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예.

○委員長 李允洙 어느 정도 낮추어야 피해가 없습니까?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그것을 직업병으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기준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1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아니, 이것보세요. 벤젠 때문에 환자가 나왔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해요. 노출을 어느 정도로 낮추어야 병을 막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계시냐고요?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외국의 사례를 봐서 1ppm 정도로 기준을 낮추어 사업장들이 거기에 맞추도록 하면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그렇게 보고 있으면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생각을 해서 기준을 낮추어야지, 지금 李 위원이 지적하니까 이제 노동부하고 상의를 한다고 했는데 노동부하고 상의할 문제입니까?

차관님, 이것을 노동부하고 상의해야 할 문제입니까?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이것은 산업안

전보건법시행규칙을 고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委員長 李允洙 그러면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착수했습니까?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언제 올렸습니까? 노동부 이것 받았어요? 기획관리실장 이것 받았어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산업안전국장 宋智泰입니다.

협의를 미리부터 했고 지금 전문가 회의까지 해가지고……

○委員長 李允洙 언제부터 했어요? 어몰어몰 하지 말아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이것은 전문가 회의까지 끝나서, 시행규칙을 고치는 사항이 아니고 고시로 고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동부장관이 곧 하는 것으로 이렇게……

○委員長 李允洙 아니 지금 공단 이사장은 시행규칙을 고친다고……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죄송합니다. 시행규칙을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그러니까 자꾸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금방 확인하면 나오는 문제를, 이런 중요한 문제를 무엇을 고쳐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앉아서 무슨 협의를 하느니 뭐니 그런 말씀을 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명을 빼앗아가고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면서 국회의원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해요? 정확하게 답변서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나, 노동부하고 협의한 그 결과까지 다해서 진행상황을 1주일내로 보내 주세요.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李承哲 위원께도 보내 주고 전체 위원들한테 다 보내 주세요. 약속 지키세요!

○韓國産業安全公團理事長 文亨男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金樂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樂冀 委員 산업안전공단에 CLEAN 3D사업에 관해서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앙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노사정위원회 이상 7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과 개선하신 고견들을 깊이 유념하셔서 앞으로의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 시간관계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성실한 서면답변서를 작성해서 2월18일까지 모든 위원님들과 입법조사관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서는 모두 회의록에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은 서면질의를 여러분들께서 너무 경시합니다.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저속한 표현으로 정말 엉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만큼은 서면질의에 대해서 철저히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확실한 답변을 받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께서 양찰하셔서 정확한 서면답변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出席委員(11人)

金樂冀 金文洙 金晟祚 金洪信
朴仁相 申溪輪 李承哲 李允洙
全在姬 鄭宇淵 崔明憲

○出張委員(1人)

李浩雄

○請暇委員(2人)

李康斗 金元吉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姜長錫
전문위원 朴龍判

○政府側參席者

노동부

장관
차관
기획관리실장
고용정책실장
노동국장
근로기준국장
산업안전국장
근로여성정책국장
고용총괄심의관
능력개발심의관
노사협력관
국제협력관
공보관
감사관
중앙노동위원장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운영국장

方 鏞 錫
金 松 子
金 元 培
金 容 達
安 鍾 根
金 聖 中
宋 智 泰
申 洙 洙
鄭 鍾 秀
朴 鎔 雄
宋 永 重
孔 德 壽
金 東 男
趙 柱 炫
林 鍾 律
安 榮 秀
河 甲 來

○其他參席者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한국노동교육원장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

金 在 英
具 天 書
文 亨 男
孫 京 鎬
李 銑
崔 成 五